

### 3. 단독강화와 日米안보조약 日台조약

일본재군비를 위해 포츠담 선언의 구속에서 자유로이 되고 피점령상태를 종결짓게 되었다. 연합국과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을 미국에 제도적으로 협력케 하기 위해서는 점령군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독립국 일본과 미국의 조약에 의한다는 형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일본이 완전히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미국의 통제가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미국이 노린 것은 첫째 대일강화는 소련·중국(49년 9월, 공산당이 지도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같은해 말에는 장개석과 국민당의 중화민국정부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도망한다)를 제외했다. 미국 진영의 4개국과 강화한 것.

둘째로 그것과 동시에 일본과 미국의 안전보장조약을 맺고 미군이 일본에 필요한 만큼 주둔하고 점령군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미국이 강화한 뒤에 오끼나와를 점령한 것이다. 미국은 이 대방침으로 대일강화를 맺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강화회의를 열어 목적을 완전히 달성했다. 즉 먼저 강화조약은 일본과 미국 진영의 여러 나와만의 강화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륙의 인민공화국 대표나 대만의 국민당정부 대표 모두 회의에 초청하지 않았다. 소련은 회의에 참가했지만 미국이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조약안에 동의하지 않고 미국의 뜻대로 통과되었다. 또한 조약의 영토권 항에서는 오끼나와와 남서 제도는 줄곧 미군의 점령지배를 보증받았다.

강화회의가 끝난 그날 일미 양국의 전권은 '일본군과 미국간의 안전보장조약'에 조인했다. 이것도 미국이 요구한 대로의 조약이다. 이것에 의해 미국은 일본에 무제한 육해공군을 배치할 권리를 가졌다. 그 군대는 극동에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고 일본국에서 '대규모 내란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보 조약에 대해서 사회당, 공산당, 다수의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부인단체 학생 조직 시민단체, 다양한 지식인 그룹은 강하게 반대하고 전면강화, 외국에 군사기지 제공 반대, 전점령군의 즉시 철수, 이론의 재군비 반대의 소리는 일본 전토로 퍼졌다. 또한 히로히토는 신헌법에 의해 국정에 관한 권한은 전혀 갖지 못했으나 비밀리에 미국측과 접촉하여 미군이 오끼나와를 장기간 지배하는 것을 바라고 또한 강화는 물론 마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것을 바랐다. 이 사실은 최근 간행된 豊下橋彥의 (안보조약의 성립--吉田외교와 천황외교)(암파신서)가 확실한 사료를 갖고 규명하였다.

### 3.

국민대중의 반대는 정부 여당 재계, 천황에 패했다. 두 조약은 52년 4월 28일 즉 히로히토 천황 생일 전날 발효했다.

이날 대만의 중화민국정부와 일본의 '일화평화조약'도 조인되었다(8월 5일 발효). 이에 앞서 51년 12월 요시다 수상은 미국 국무성 고문 딜레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일본은 중국 공산정권과는 결코 강화조약을 맺지 마시오. 반드시 중화민국과 강화하라고 하였다. 그 조약은 중화민국의 지배 하에 현재 있고 앞으로 편입될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약속했다. 일본의 중화인민공화국 적대시, 대만에 있는 반공정권 절대 지지는 여기서 확약되었다. 이 당시 대만에서는 국민당정부의 백색테러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요시다 서한과 일대조약은 그것을 강화시켰던 것이다.

## 개발체제의 두 가지 유형

-한국의 불균형모형과 대만형 양극구조-

田村紀之(TAMURA Toshiyuki: 동경도립대학)

### [1] 들어가는 말

필자의 최근 관심은 '동아시아모형'의 전형이라고 불리는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전된 양국 개발체제의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 동시에 개발체제 그 자체가 가지는 다양성을 고찰하는 데 있다. 단지 거기서 이론적 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그 작업 자체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는 아직 구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의 개발체제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대만의 경우와 비교해 가면서 이들의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소위 '개발체제'를 경제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구로 이해한다. 이같은 의미의 개발체제는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내쇼날리즘(nationalism)을 기초로 한 개발 의욕이 국가체제의 일부로 편입되어져 국민의 멘탈리티(mentality)를 규정함과 동시에 정치·경제적 여러 제도의 형태로 결실 맺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한국과 대만의 개발체제의 확립과정도 제도적 정비라고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생각해 두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단, 그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한국 고유의 사정이라고 하면, 아마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동질'적인 민족집단이지만 단일 국민국가를 형성할 수 없는 남북 분할통치라고 하는 사태를 거쳐 한국전쟁에 의해 남북이 분단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같은 역사적 배경이 한국의 내쇼날리즘 내지는 개발주의에도 그 나름대로의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국민당의 대만지배에서 보이는 개발주의와의 미묘한 차이에는 이러한 다른 사정들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성이 높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해방후에 한국이 미군정기라고 하는 미국에 의한 직접지배를 체험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발시대를 박정희 정권 이후라고 생각한다면 '개발전사'로써 이승만 정권의 개발지향과 개발체제의 형성노력에 대해서 주목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당 정권의 경우 개발전사의 소재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소위 여러 신흥독립국가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경제실력을 자신의 권력의 '정통성'을 증명할 때 식민지유제를 자각적이고 선택적으로 '활용'해왔다. 단지, '식민지 내쇼날리즘'의 이런 측면에는 한국과 대만의 탈식민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연구 규명해야 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역사적 내쇼날리즘이 '상상의 공동체'(B.Anderson)였다고 해도 이것을 국민국가의 개발체제로서 결정화시킨 메카니즘에는 한국과 대만만을 들어봐도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분단이데올로기'와 대만의 '省籍矛盾'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 [2] 개발독재와 국가자본주의

한국과 대만의 개발체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개발독재'라는 시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논자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용어는 개발과 독재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고 하는 이점을 가지지만 '통치효율'의 장점을 기준으로 한 궁정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버릴 수 있다. 더욱이 필자가 애용해 온 '권위주의' 개념도 과거로부터 사회심리학 용어로 많이 사용되어 온 배경이 있는 만큼 혼란의 근원이 될 소지가 있다. 한편 한국이나 대만의 개발체제는 국가의 강력한 시장개입에 의해서 공업화를 통한 경제자립을 겨냥했다라는 의미로 자주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린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이 용어는 '후기개발' 자본주의 여러 나라의 개발전략을 특징짓는 말로써 사용되고 있다. 그 전략의 특징은 대내적으로 가능한 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국내자원을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적인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 수입대체와 수출지원책을 잘 조합시킨 어른바 '전략적 무역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개발독재론에서 보아도 국가자본주의론에 의거한 경우에도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일체인 것으로써 파악되고 국가 유형의 하나로서 요약되어져 버린다. 즉, 동일유형의 국가는 유사한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한 유사한 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비슷한 산업·무역정책을 채용하게 마련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

제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크지만 이 논의는 논리적으로 난점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도 반드시 합치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들 용어를 경제체제에 한정하고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특징을 가진 개발체제의 의미와 거의 같은 의미의 말로 해석하고 호환적인 것으로써 사용한다.

### [3]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국가자본주의

미군정기가 한국사회에 준 충격의 크기는 아직 충분히 해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후의 연구에서 깊이있게 연구되리라 기대되어진다. 단지 국가기구의 정비와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정해서 말하면, 군정이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의 거의 대부분을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장치와 인재에 의해 보완한 것이 중요하다. 결과로써 이승만 정권~시대에 진행된 국가 형성은 그 ‘반일’적 자세와는 반대로 미국식의 골격에다 일본적인 여러 제도로 살을 붙인 격이 되었다. 그후 혼란의 시대를 거쳐 한국이 겨우 자력으로 기구정비를 마친 것은 60년대 들어와서라고 봐도 좋다. 당연하지만 이것은 한국의 국가형성이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지향과 일체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개별적으로 볼 경우, 법제도상으로는 완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고 유명무실화된 사례도 적지않다. 이것을 ‘軟性國家’(G.Myrdal)적 요소로 볼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나눠진다.

한국의 개발체제의 형성과정을 제도정비의 면에서 개관해 보자. 헌법과 정부조직법 제정(1948)에 의해서 국가의 골격이 만들어졌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 국민의 식량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쏟는 것이 건구당초의 실정이었다. 국고금과 외화를 정부의 손으로 일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일제 자산(귀속자산)의 접수, 새로운 중앙은행(한국은행)의 설립 등 경제제도의 정비를 개시한 바로 그때 일어난 것이 한국전쟁이었다. 전후 부흥을 위해서 경제재건안은 모두 전쟁말기경부터 국제연합(미국)의 손에 의해서 구상되어 왔지만 어느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개발체제와 관련해서 주목되어 온 것은 한국 헌법의 ‘세계적으로 좀처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세한’ (윤용택)경제조항의 여러 규정이다. 우선, 1948년의 제헌헌법은 그 제6장을 ‘경제’라고 하고 극히 ‘국가자본주의’적 색채가 강한 조문을 배치하고 있다. 즉, 우선 제84조에서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한다’라고 한데다가, 중요 지하자원의 국유(제85조), 농지의 배분(제86조), 운수·통신·금융 등의 국공영과 대외무역의 국가통제(제87조),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기업의 국공유 이전(제88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헌법의 경제규정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제요소를 강조한 형태로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재 제6공화국 헌법(1987년 제9차 개정)에서 조차 오히려 세분화되는 형태를 계승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국가자본주의’적 입장을 선명하게 했다는 ‘전후 부흥 5개년 계획’의 개시는 1954년이지만, 정치적 혼란 때문에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 정권은 ‘4·19’혁명에 의해 붕괴되었다. 후속 정권도 단명으로 끝나고 경제개발을 위한 체제 형성은 사실상 5·16군사혁명 이후인 196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후의 수출 중심주의 고도성장노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950년대의 정책 속에서 보여진다. 특히, 귀속자산을 불하받아 탄생한 재벌계 기업이 한국 대출에 있어 재벌이 부여받은 특혜조치가 한국형 수출지원금융의 원초적 형태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또한, 1954년 노동기준법은 그후의 노동법과 사회복지체계의 정비(특히, 1963년의 산업재해보상법)의 출발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상범은 이를 법안의 입법을 ‘실정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효력이 보장되지 않는 “간판법”’이라고 했다. 이외에 법정비의 관점에서 보면, 형법제정이 1953년에 있었던 것에 비해 민법은 1958년, 상법은 1962년에 가서야 제정된 사실들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군정기 이후 법의 공백상태를 피하기 위해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의 법조항을 적용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결과적으로 법제도면에서 보면 식민지 법제가 군정시대에 이어 신정부에도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적지 않다. 이것이 식민지 잔재를 남기게 된 요인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어쨌든 치안·형사제도면에서 식민지 법제의 악영향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온 사항들이다.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정치제도면에서도 경제조직면에서도 경제개발주의를 기치로 하

는 국가체제가 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치안 유지기구는 제헌헌법부칙 제101조 반민족행위 처벌 규정을 기초로 한 '반민법'(1948)과 국가보안법(1949)은 한국전쟁중의 비상 조치에 의해 기본적인 구조를 설정했다. 이들 중 많은 수는 폐지 또는 개정되어 1960년 '신국가보안법', 이듬해 61년 '반공법'으로 결실을 보았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해서 도입한 외자를 발판삼아 여러 가지 물적·인적 자원을 경제개발에 총동원하기 위한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 장치를 가동시키기 위한 지침으로써 역할을 한 것은 주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남북분단에 의해 공업기반의 상실, 한국전쟁에 의한 파괴와 전후 복구가 늦어져 三白產業(原綿, 原糖, 밀가루) 또는 三紛產業(原綿산업이 시멘트로 바뀌어) 등의 광공업밖에 갖고 있지 않은 빈곤한 농업국이었다. 제1차 계획이 원재료 수입에 의존한 경공업 제품의 가공수출에 의한 성장지향적이었다는 것은 그 이외에는 선택 할 여지가 없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은 그후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을 거듭함으로써, 경공업에서 중공으로 더욱이 중화학공업으로 기반산업을 중심이동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성공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은 권위주의적 경향을 강화, 유신헌법을 제정(1972)하기에 이른다. 이 체제는 발족한 다음 해의 제1차 석유위기에 타격을 입었으나 중동건설 참가 등에 힘입어 다행히도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석유문제의 대응이 늦어지는 결과를 놓아 1979년 제2차 석유위기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또한 정치체제로서 절정기에 있던 한국의 권위주의체제도 국내외 압력에 의해 스스로의 기반을 침식당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장기간의 고도성장노선이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총동원 수출일변도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체질화'되어 중화학공업의 후면에서 진행된 농업의 정책은 농촌사회의 병폐를 개선할 유효한 정책이 수립되어지지 않은 채 지역간 농공업간 격차의 확대는 정치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1977년에 본격화된 '새마을운동'도 이러한 농촌개발의 긴급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국방과 사회복지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방위세(1975), 부가가치세(1977)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복지공약은 뒤로 미루어져 중화학 관련 설치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냈다. 이것은 재벌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중복투자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그후 전두환 정권에 의한 강권적 중화학 공업조정(1979)에 막겨지게 되었다. 한편 임금상승에 의한 한국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와 선진공업국들의 보호주의 정책의 비판과 후발개발도상국의 추격 등의 요인에 의해 한국정부는 수출산업의 강화육성과 국내시장 개방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정책운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1차 수입자유화 계획은 1978년에 발표되었다.

다시 말해 1960년부터 70년대에 걸쳐 한국개발체제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울 수 있다. 우선 첫째로 한국 외자정책은 직접투자를 억제하고 차관중심으로 일관되었다. 이것은 강권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외국자본, 구제적으로 일본자본에 의한 재지배를 경계하는 국민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차관중심주의 외자정책이야 말로 한국형 개발체제에서는 가장 채택하기 쉬운 정책수단이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한국형 체제의 최대 특징은 정부도입에 의한 차관이 재정과 금융이 일치된 수출지원 정책금융 루트를 통해 재벌기업에 분배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둘째, 수출지원 내용은 수출실적과 특혜조치를 연결시키는 수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수출기업은採算을 도의시하더라도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결과 정부와 재계간에 유착이라는 병폐를 놓게 되었다. 이러한 수출지원체제가 무역정책으로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역수지가 일시적이지만 흑자전환을 한 것이 겨우 1986년에 가서야 되었다는 것으로 부터 추정될 수 있다.

셋째,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개발체제는 반공을 국시로 해서 경제개발주의를 고무, 국민을 총동원했다. 이를 위해 준비된 정치·치안·사회기구를 채찍으로 삼는다면 경제성장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환원하는 것은 즉, 다시 말해 '사탕'이 된다. 그러나 성장의 과실물이 환원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국민의 인내가 전제조건이 된다. 군사혁명정권의 '혁명공약' 중 복지사회의 실현은 정권비판이 높아질 때에 국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사탕)으로 내놓아졌을 뿐 언제나 보류대상이 되어왔다. 한국이 최저임금법을 제정,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1988년이 되어서였다. 물론 여기서 국방비의 중압이라는 제약이 있었던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 [4] 臺灣型 開發體制와의 比較

以上의 觀察을 臺灣의 境遇와 簡單하게 比較해 보자. 아는 바와 같이 臺灣은 重化學工業을 國營企業으로 育成하는 姿勢를 維持해 왔다. 게다가 臺灣의 權威主義 體制는 政·官·軍·財의 全部를 國民黨이 統一的인 支配下에 두려는 方式이었다. 그 結果 內需市場에서 排除된 民間 中小企業은 輕工業品 加工輸出에 活路를 걸 수밖에 없었다. 劉進慶의 「國家資本과 民間資本의 兩極構造」가 이것이다. 이점에서 臺灣의 開發體系와 韓國은 確實하게 性格을 달리하고 있다. 예를들면 外貨導入에 관해서는 在外 中國人 資本의 導入을 目的으로 했기 때문에 直接投資에 대해서는 꽤 慷容의하였다.

國家指導者의 開發指向이 體制로써 結實을 맺을 典型으로 維新體制下의 韓國과 戒嚴令下의 臺灣을 對比해서 보자. 當時의 韓國 政治的 指導層(政治엘리트)은 말할 것도 없이 軍部와 官僚였다. 이 兩者와 密接하게 關係를 맺는 것에 따라 經濟的 利益을 늘려왔었던 것이 財閥 리더들이었다. 韓國에 있어서 輸出產業의 雁行形態의 發展의 歷史는 그대로 財閥의 肥大化의 歷史다. 이것에 대해 臺灣의 境遇에는 피라미드形의 堅固한 組織을 가진 國民黨을 基本으로 党과 政府의 官僚 및 軍의 首腦가 一體된 政治 엘리트를 構成해 왔다. 重要한 것은 이 支配機構가 거의 「外省人」에게 獨占되어 왔다는 事實이다. 舊 日帝 財產을 政府가 接收해서 그후의 經濟建設에 活用하려 했던 점에서는 韓國과 同一하지만 臺灣에서는 重化學工業關連의 基幹產業의 大部分을 國營企業으로 國家의 管轄下에 두었다. 그 結果 國營企業은 外省人の 經濟的 權益의 源泉이 되었다. 民間人에게 拂下를 통해서 財閥을 育成해온 韓國과는 이점에서 顯著하게 對照的이다.

政治體制로서는 큰 差異를 보이는 韓國과 臺灣이지만 勞使(資)關係에서는 類似한 機構를 두어서 勞動運動을 抑制해 왔다. 코-포라티즘(協調組合主義)의 組織을 잘 活用함과 함께 國民 欲求를 그 組織을 통해서 吸收시키고 福祉施策으로써 還元하는 方式 「코-포라티즘의 包攝」이라고 불리우는 官民協調機構가 그것이다. 이것을 「

國家資本主義」特徵의 하나로 보는 論者도 있다. 公的인 治安·情報機關과 私的 暴力組織이 이 協調機構를 「補完」해 왔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다. 단지 韓國에서는 이런 種類의 協調機構는 勞動者の 包攝이라는 面에서는 臺灣보다 덜 徹底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反對로 臺灣에서는 海外 화교·화인資本과의 네트워크를 가진 民間企業가 사이의 相當數가 「脫漏」部分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진다.

以上을 要約해 보자. 韓國의 工業化 過程을 藤原三代平의 說에따라 「하이에크 過程」이라고 본다면 그 特徵은 財閥系 大企業에 의한 投資財 및 輸出消費財 部門과 非財閥系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한 國內消費財部門 間의 不均衡 發展過程이 된다. 投資·輸出消費財 部門에의 資源의 「傾斜配分」을 可能하게 한 것은 政府에 의한 信用創造였으며, 그 資源으로써 外資導入이었다. 當然한 일이지만 이 不均衡過程은 두 事態를 가져와 韓國經濟의 「體質」이 되어버렸다. 그 하나는 高度成長期의 慢性的 인플레이션이고 이것이 所得再分配에 의한 賦蓄率의 上昇에 貢獻했다. 財閥系企業의 衰弱한 財務體質도 이것에 附隨的인 現象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급한 重化學工業化 政策이 投資·輸出消費財 部門에 自主技術開發의 餘地를 부여하지 않고 結果的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 完成品 分解에 의한 技術習得)과 턴-키(turn-key : 즉석완성 기술도입)方式에 의한 輸出實績 向上에만 專念하고 만 것이다.

이것에 대해 臺灣의 경우, 「民生主義」體制가 國營基幹產業(重化學工業)에 의한 國內市場의 獨占的 地位를 要求해 왔기 때문에 輸出은 오로지 民間의 中小企業에 의한 輕工業品을 주력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劉進慶이 말하는 「兩極構造」가 그것이다. 確實히 臺灣型 開發體制와 重化學工業과에 있어서는 눈부신 成果를 올렸다고는 하지만 重化學工業을 輸出產業으로써 活用한다는 面에 있어서는 韓國에 뒤지는 結果가 되고 말았다. 國營企業의 比重은 最近 低下一路를 걷고 있다. 이 意味에는 臺灣이 바야흐로 現在, 開發形成期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臺灣의 兩極構造는 開發初期의 物價急騰을 克服한 뒤에는 韓國처럼 高인플레이션, 高成長이 아닌 「堅實」한 經濟運營을 可能케했다. 資金調達面에서도 在外 화교·화인 네트워크의 存在는 韓國에는 없는 利點이 되었다. 結果的으로 臺灣의 貿易收支는 長期的인 黑字를 구가해 慢性的인 赤字에 苦悶하는 韓國과는 좋은 對照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財閥 主導型과 國營企業 主導型의 差異의反映이라고 하면 그뿐이지만 所得分配의 面에서도 臺灣은 韓國보다도 良好한 實績을 남기고 있다.

## [5]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의 多面性

現實의 開發獨裁는 이 概念이 가지는 多義性 그대로 多面的인 性格을 가지는 것이고, 韓國과 臺灣의 境遇에도例外는 아니다. 여기서는 以上에서 다루지 않았던 몇 가지 論點을 指摘하고 그것으로써 本稿의 結論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첫째, 소위 「中南美模型」과 比較 問題가 있다. 말할 것조차 없이 韓國과 臺灣의 開發體制는 이것과 比較 對照되는 個別 例의 差異에 의해서 달라진 側面을 浮上시키게 된다. 우선 中南美諸國을 比較 例로 들더라도 韓國에는 韓國 나름대로 臺灣에는 臺灣 나름대로의 「特異」性이 있는 것을 留意해야 할 것이다. 「軍部·官僚支配型」權威主義 라고 불리도 좋은 韓國의 朴正熙 體制에 대해서는 특히 그 政軍關係의 面에서 상당한 獨特한 事例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言及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臺灣의 「一黨支配型」制度도 國民黨의 「共產世界 以外에는 어떤 政黨도 이길수 없는」(田弘茂) 水平的 및 垂直的인 統制力이라고 하는 점에는相當한 特異한 分類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經濟實績에 關해서는 많은 中南美諸國 보다도 훨씬 良好한 結果를 자랑하는 韓國과 臺灣兩國이지만 이러한 事實과 韓國과 臺灣의 「開發」面과 「獨裁」面의 어느쪽을 강조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別個의 問題이다.

둘째, 어떠한 強權的인 支配者라도 해도 經濟 狀態의 惡化는 權力의 正統性의 危機를 招來할 만큼, 經濟運營에는 細心한 注意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政經不可分」體制인 臺灣에 있어서 조차도 權力者는 經濟運營에 萬全을 기할 責務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權力者는 그 經濟政策이 成功하면 할수록 틀림없이 그 成功이 낳기 시작한 여려勢力에 의해서 正統性은 相對的인 것이 되고 權力基盤을 侵食되고 있다. 두번에 걸친 石油危機에 있어서 各國의 對應狀態로부터 이 問題을 檢討하는 것은 极히 興味津津하다. 1973年の 第1次 石油危機는 많은 權威主義 政權의 退陣을 재촉했지만 韓國과 臺灣은 強權支配體制를 持續했다. 하지만 1979年 第2次 石油危機때에는 韓國의 朴正熙 維新體制는 崩壞되고 臺灣은 戒嚴體制를 繼續 維持했다. 臺灣의 權威主義 體制가 「制度」의 正統性 困難을 「人的要素」의 正統性으로 補完함에 따라 長期的인 安定性을 確保하는 것이 可能했다(田弘茂)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카리스마的인 性格을 갖춘 人的要素를 결한 韓國의 경우, 指導者의 交替는 結局 制度의 改廢를 招來했다. 韓培浩는 이같은 일을 가리켜 韓國의 權威主義는 「制度化」에 失敗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는 第1次 石油危機를 克服한 韓國의 第4共和國은 別途注意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쿠데타에 의해 權力의 자리에 오른 軍人指導者가 政權掌

握時의 「公約」을 지켜 民選으로 出馬하고 制服을 갈아입은 指導者로서 그대로 權力を 維持한 事例는 드물지 않다. 하지만 經濟危機는 民間과 軍部指導層과의 同盟關係에 금이 가고 極端的인 境遇에는 政治指導者の 목을 바꾸어 다는데까지 發展한다. 그렇지만 朴正熙의 第3共和國은 軍人 大統領이 軍部指導層을 누름에 따라 經濟政策의 옳고 그름을 둘러싼 軍 内部의 派閥 抗爭을 未然에 막는데 成功한 별로 없는 事例의 하나라고 한다(Haggard & Kaufman). 그렇지만 實際로는 大統領과 軍部의 「密月」도 石油危機 直前에는 破綻되고 「大統領의 쿠데타」敢行後의 維新體制에 의해 經濟危機의 克服은 可能하게 됐다. 한편 臺灣의 境遇에는 만약, 内部의 政策論爭이 激化됐다고 하더라도 派閥抗爭으로 發展한 深刻한 事態를 招來한 危險性은 党·政·軍이 一體化한 構造에 의해서 最小限으로 抑制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臺灣의 「制度化」 秘訣은 반드시 장개석 一家의 카리스마的인 性格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끝으로, 韓國과 臺灣政府의 市場介入 형편에 대해서 附言해둔다. 東아시아 諸國의 官民關係에 대해서는 溫情主義的(家父長的) 介入이 基調를 이루고 있다고보는 意見이支配的이다. 確實히 溫情主義의 官民關係는 國家資本主義의 必須不可缺한 要素의 하나라고 봐도 괜찮다. 實際 개별적으로 여러國家의 市場介入方法을 比較해보더라도 비슷한 戰略과 政策手段의 採用이 뚜렷이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事實을 國家資本主義 그 自體의 特性이라고 하기보다는 國家의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觀察되는 事實이고 結局 程度의 差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溫情主義의 市場介入을 東아시아 特有의 「異質」性 특히 儒教文化와 直結되는 論調는相當히 短略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 但只, 類似한 制度를 導入했다고 해도 각각의 國家마다 社會的 文化的인 背景이 다르면 制度의 機能과 違行에도 差異가 생긴다. 東아시아 혹은 韓國과 臺灣의 「異質」性을 論한다고 하면 이 論脈에 따라 행하는 것이 至當할 것이다. 내쇼날리즘과 마찬가지로 制度도 또한 「特許權 設定이 不可能한 發明」(Anderson)이기 때문이다.

韓国 景気循環

(単位: 年・月、ヶ月)

|     |             |        |       |       |         |         |       |       |       |       |
|-----|-------------|--------|-------|-------|---------|---------|-------|-------|-------|-------|
| 底 点 | 57. 11      | 60. 6  | 64. 6 | 72. 6 | 1972. 3 | 75. 6   | 80. 9 | 85. 9 | 89. 7 |       |
| 頂 点 | 1957. 1     | 59. 10 | 63. 7 | 71. 8 | 74. 5   | 1974. 2 | 79. 2 | 84. 2 | 88. 1 | 91. 1 |
| 底 点 | 1957. 11    | 60. 6  | 64. 6 | 72. 6 | 75. 7   | 1975. 6 | 80. 9 | 85. 9 | 89. 7 | 93. 1 |
| 拡 張 |             | 23     | 37    | 86    | 23      |         |       |       |       |       |
| 收 縮 | 10          | 8      | 11    | 10    | 14      | 23      | 44    | 41    | 28    | 18    |
| 全期間 |             | 31     | 48    | 96    | 37      | 16      | 19    | 19    | 18    | 24    |
| 出 所 | 韓国銀行 [1977] |        |       |       |         | 39      | 63    | 60    | 46    | 42    |
|     | 統計庁 [1995]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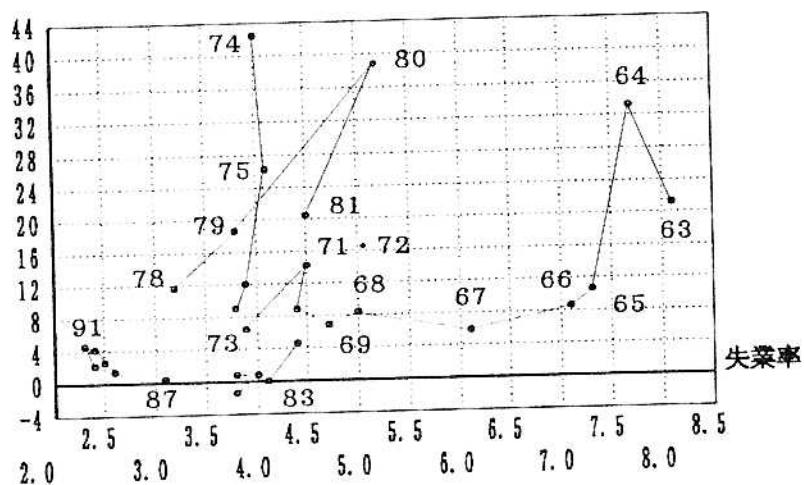
|     |                      |       |        |        |       |    |  |  |  |  |
|-----|----------------------|-------|--------|--------|-------|----|--|--|--|--|
| 底 点 | 1973. 5              | 75. 5 | 77. 8  | 80. 10 | 82. 4 |    |  |  |  |  |
| 頂 点 | 1974. 3              | 76. 8 | 78. 10 | 81. 9  | 84. 7 |    |  |  |  |  |
| 底 点 | 1975. 5              | 77. 8 | 80. 10 | 82. 4  | 85. 7 |    |  |  |  |  |
| 拡 張 |                      | 10    | 15     | 14     | 11    | 27 |  |  |  |  |
| 收 縮 | 14                   | 12    | 24     | 7      | 12    |    |  |  |  |  |
| 全期間 |                      | 24    | 27     | 38     | 18    | 39 |  |  |  |  |
| 出 所 | 長田 博・平塚大祐 (編) [1992] |       |        |        |       |    |  |  |  |  |

(出所) 韓国銀行『韓国 決済政策』、1977年。  
 統計庁『光復以後 50年間の経済日誌』、1995年。  
 長田 博・平塚大祐 (編)『アジアの成長循環』、ア  
 ジア経済研究所、1992年。

Phillips Curves for Korea & Taiw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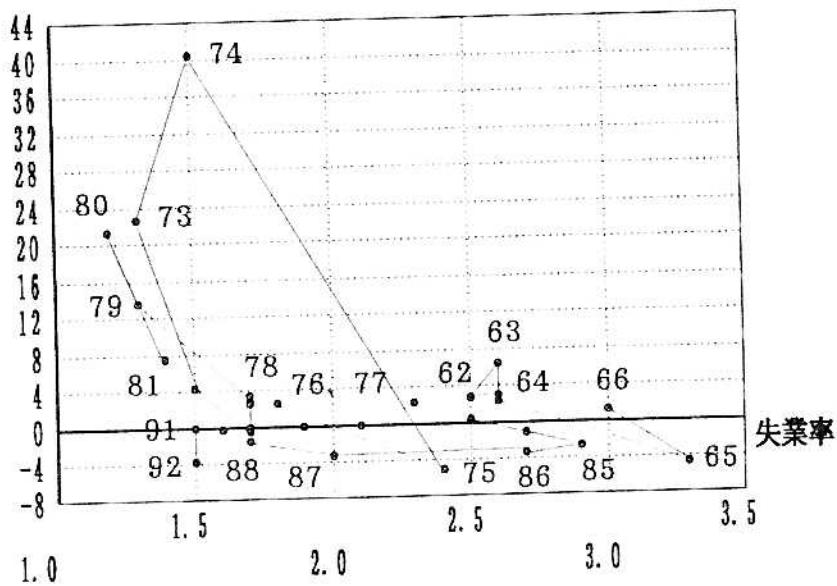
韓国のフィリップス曲線

PPI上昇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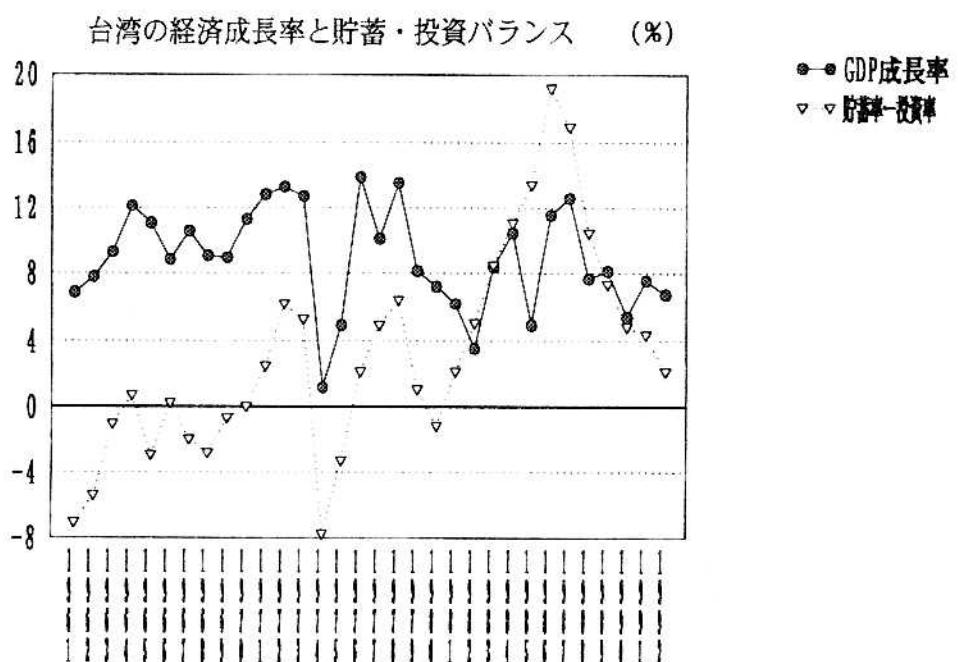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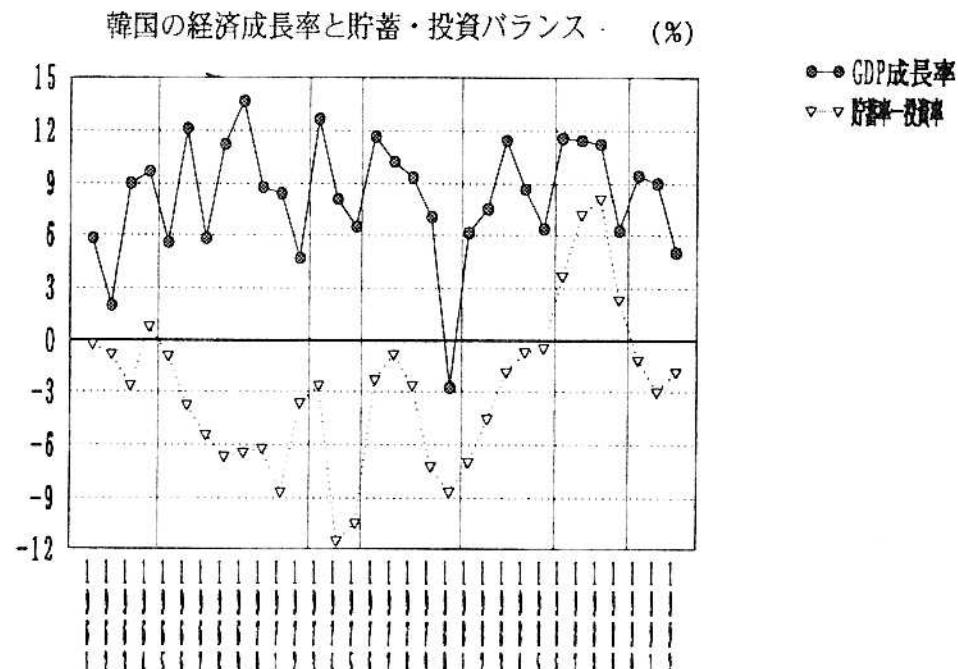


台湾のフィリップス曲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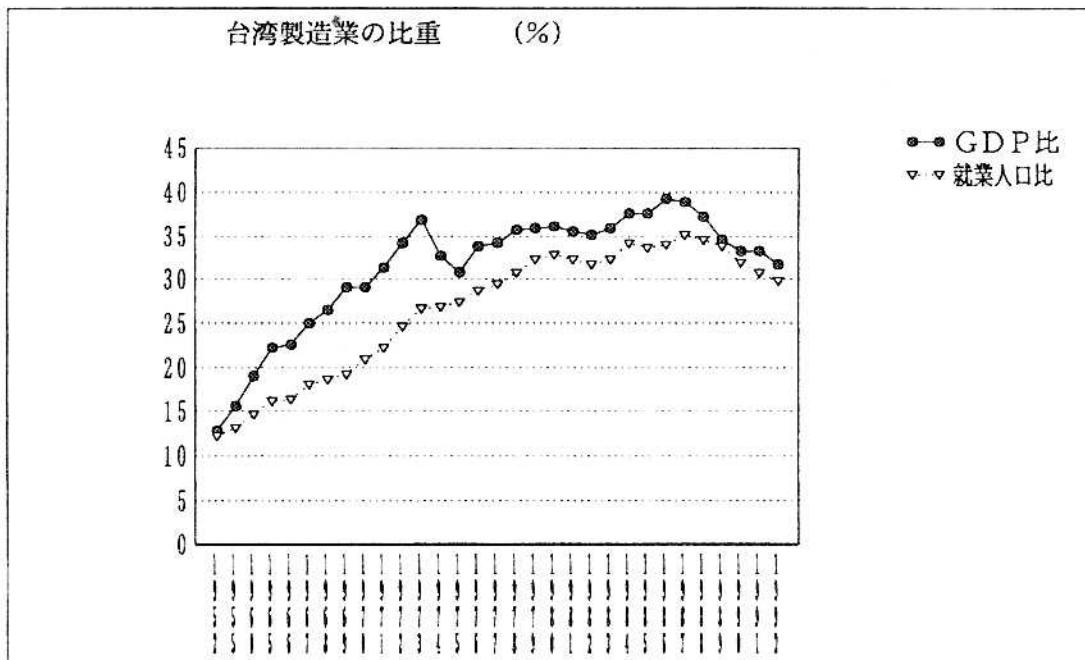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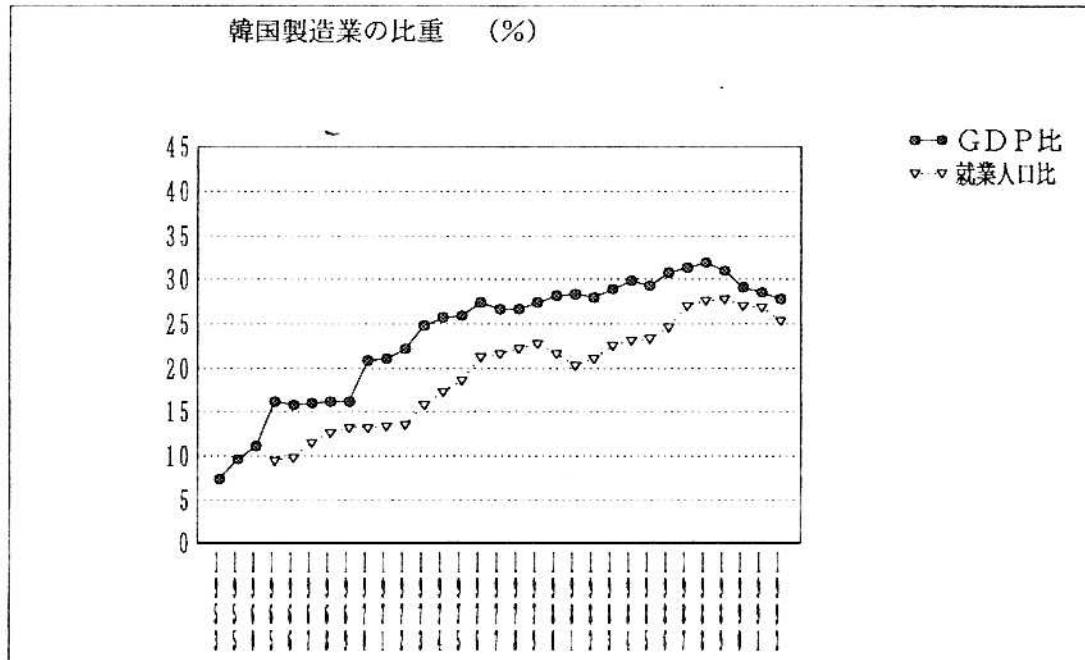
WPI上昇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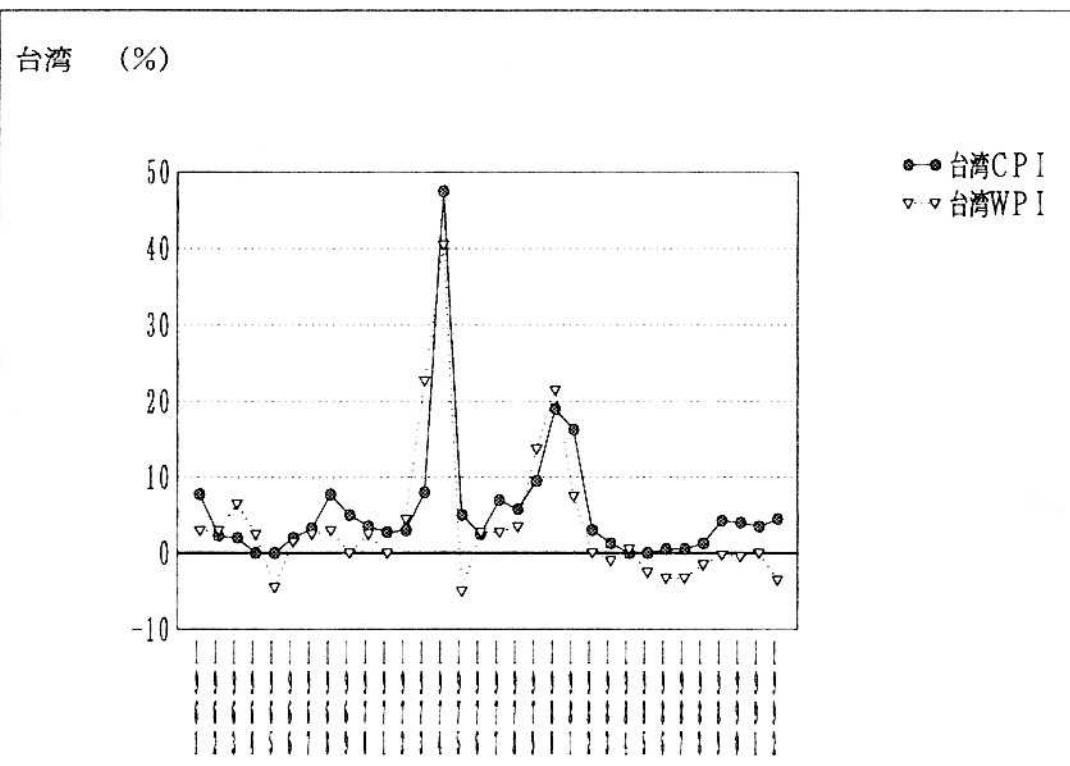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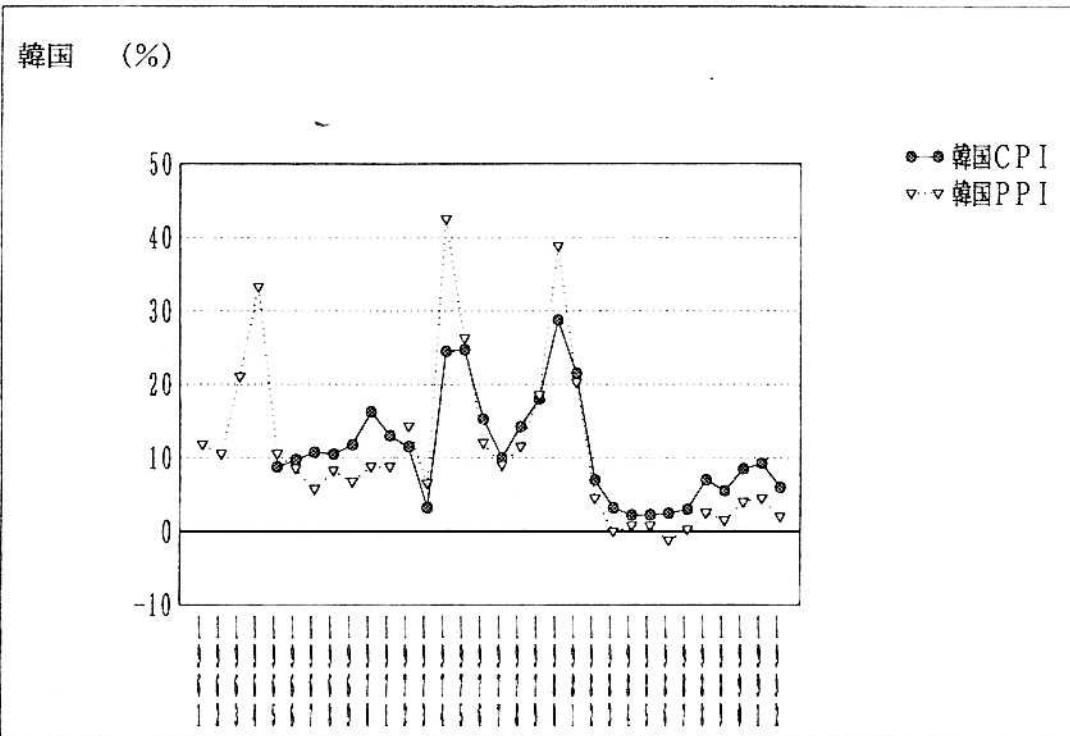
## Growth Rates & IS Balance



## 韓台の工業化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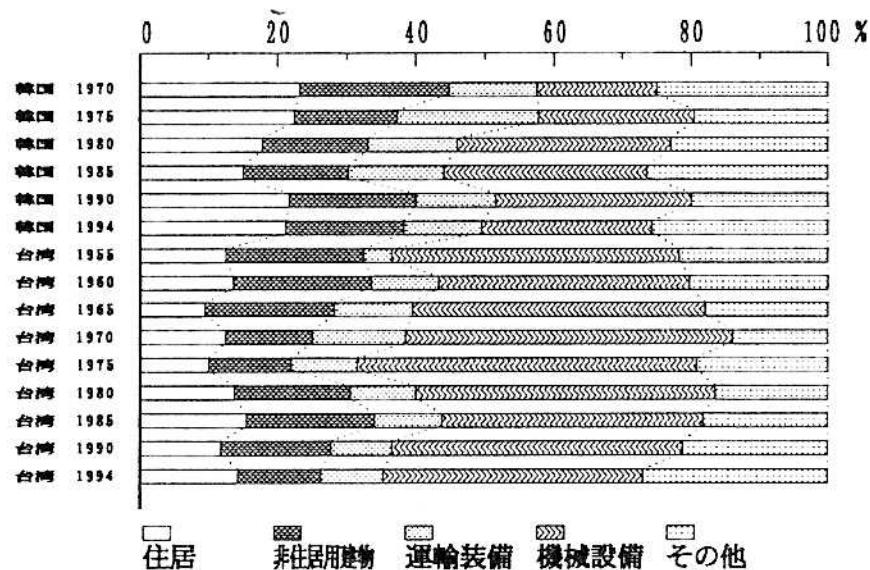


## 物価上昇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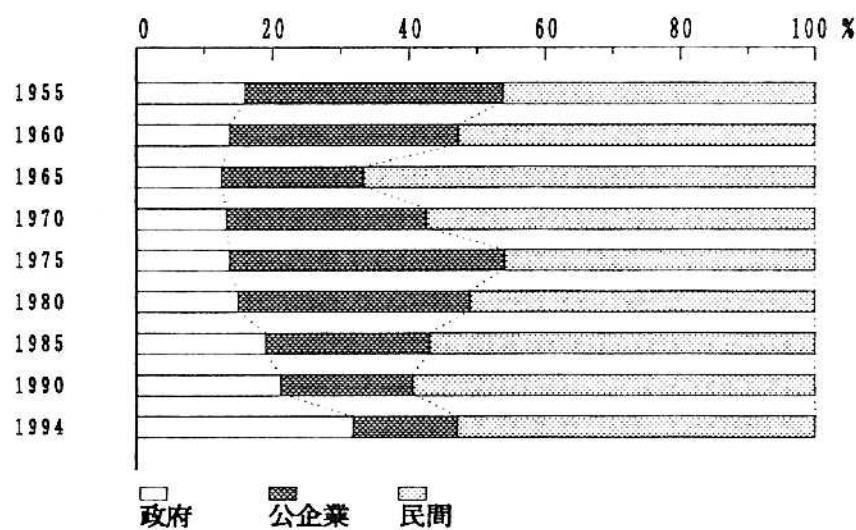


## 投資の構成

総固定資本形成の形態別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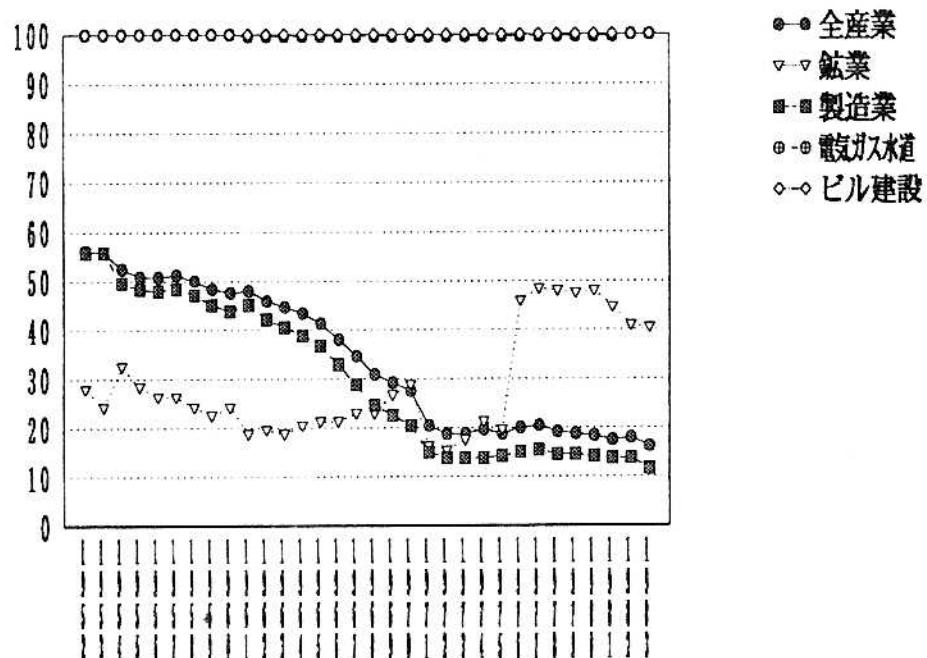


台湾の部門別総固定資本形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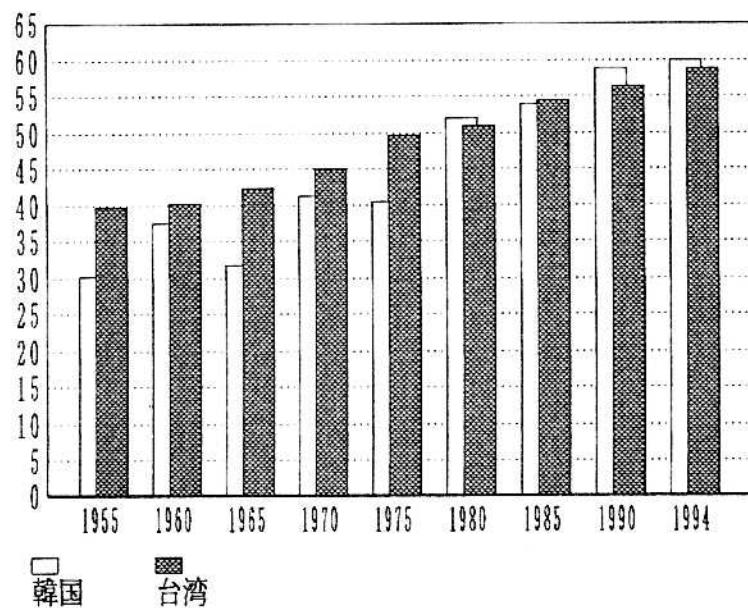


## 台湾の公企業と所得分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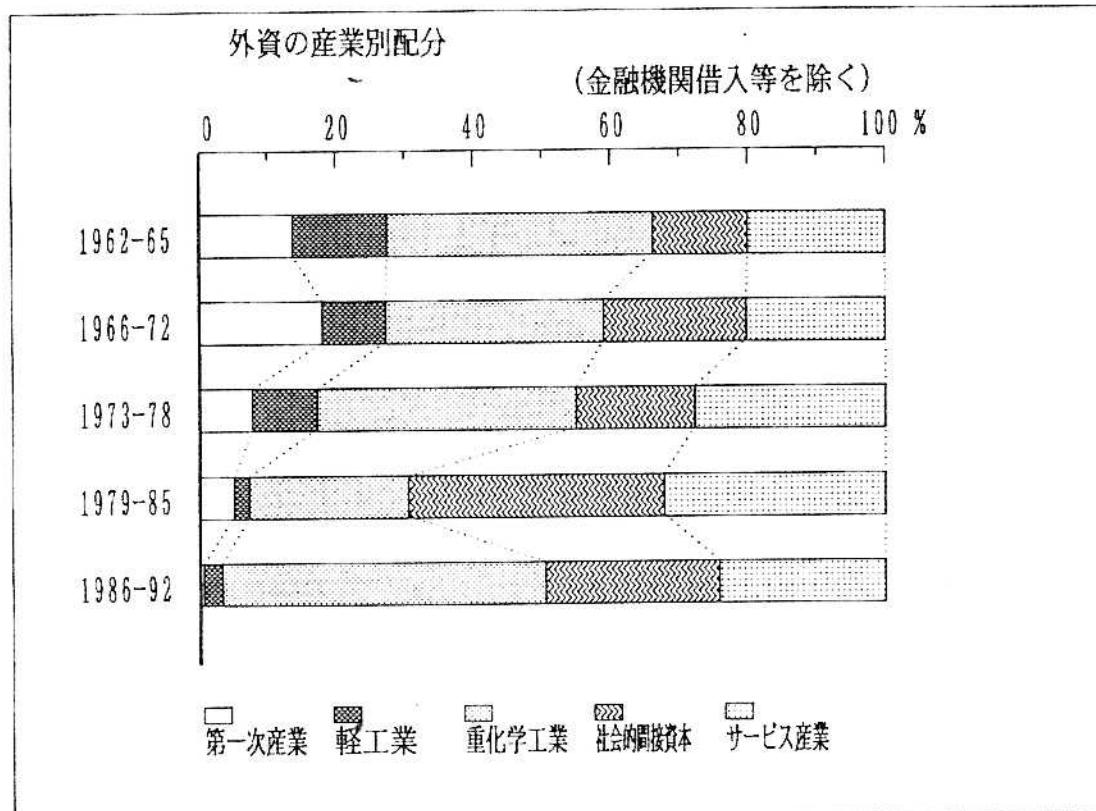
台湾の公営企業 (付加価値、%)



労働所得分配率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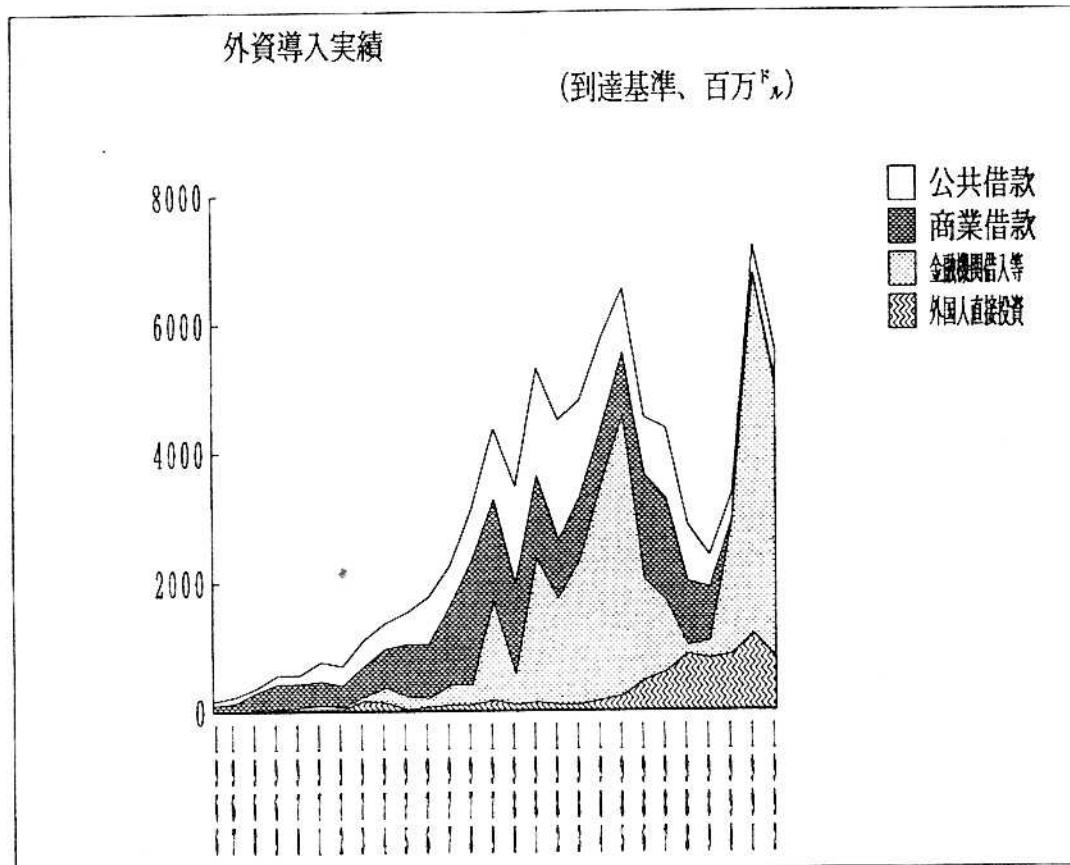


外資の産業別配分（韓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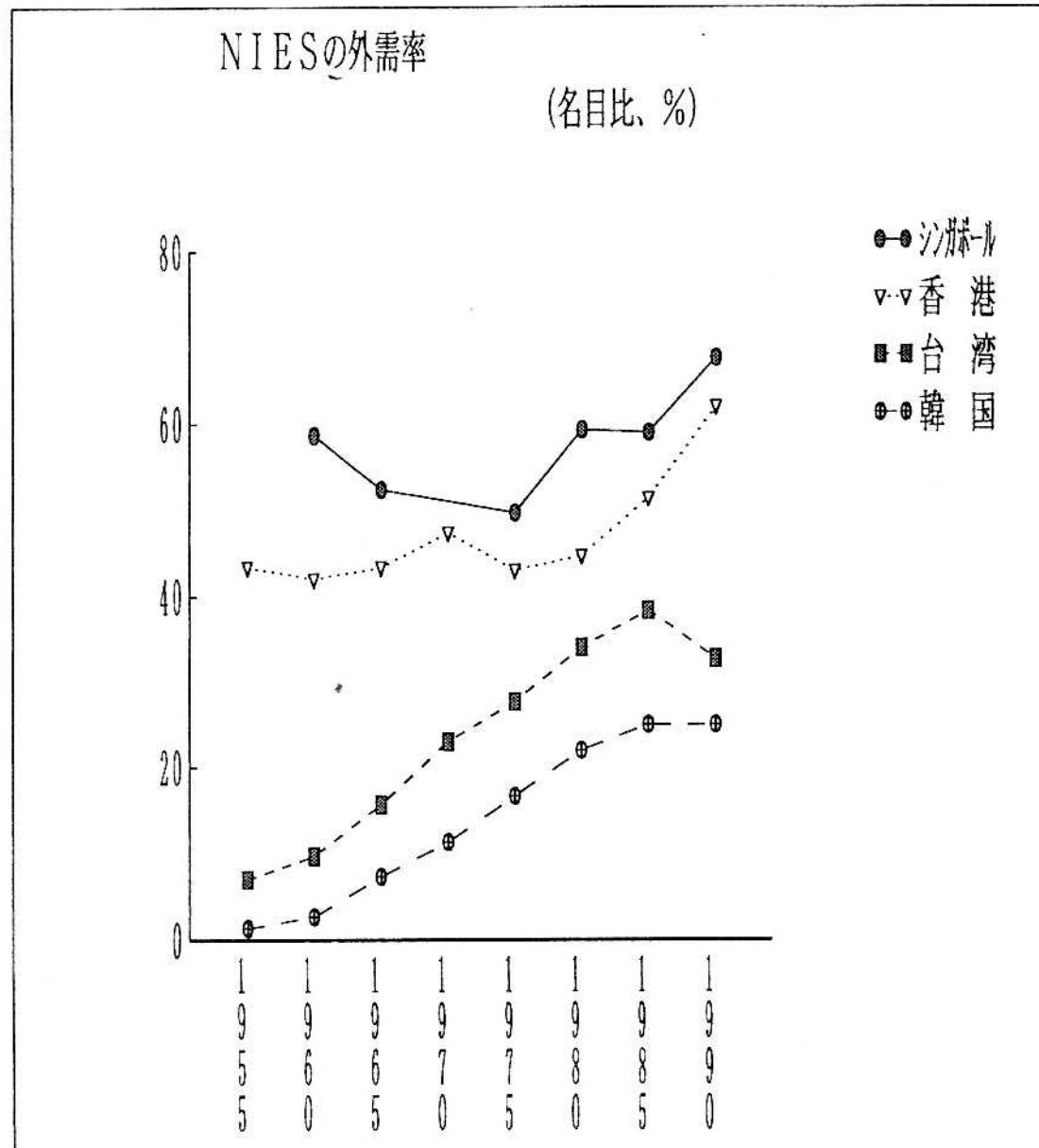
(出所) 財務部・韓国産業銀行『韓国外資導入30年史』、1993年。

韓国 外資導入実績



(出所) 財務部・韓国産業銀行『韓国外資導入30年史』、1993年。

NIESの外需率



外需率 = 輸出等 / (内需 + 輸出等) = 輸出等 / (GDP + 輸入等)

(出所) World Bank, World Tables および CEPD,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 参考文献

(\* : 韓国語、# : 中国語)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Verso.

崔 章 集 (Choi, Jang Jip) [1989]. Labor and the Authoritarian State: Labor Unions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1961-1980, Korea University Press.

Haggard, Stephen & Robert R. Kaufman [1995].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韓 培 浩 (Han, Bai Ho) [1993]. 『韓国と政治過程と変化：権威主義政治と生成と展開』、法文社。

\*——— [1994]. 『韓国政治変動論』、法文社。

韓 義 泳 (Han Hi-Young) [1995]. "韓国における開発独裁型経済開発計画と輸出振興政策", 『経済学論集』(大阪経法大), 11月号, 1-47.

韓 相 範 (Han, Sang Bom) [1993]. "憲法: 憲法政治と立憲民主化の課題," 小島武司・韓相範(編)『韓国法の現在』(上)、中央大学出版部, 141-228.

Hayek, Friedrich A. [1933]. Monetary Theory and the Trade Cycle, translated by N. Kaldor and H.M. Croome, Jonathan Cape Ltd..

——— [1935]. Prices and Production, 2nd ed., Routledge & Kegan Paul Ltd..

李 鐘 元 (Lee, Jong Won) [1996]. 『東アジア冷戦と韓米日関係』、東京大学出版会。

Linz, Juan J. [1975]. "Totalitarian and Authoritarian Regimes," in F.I. Greenstein & N.W. Polsby (eds.), Narcopolitical Theory, Addison-Wesley, 175-411.

劉 進 慶 (Liu Jin-qing) [1975]. 『戦後台湾経済分析』、東京大学出版会。

Myrdal, Gunnar [1968].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3 Vols., The Twentieth Century Fund, Inc..

篠原三代平 (Shinohara, M.) [1991]. 『世界経済の長期ダイナミックス: 長期波動と大国の興亡』、TBSブリタニカ。

隅谷三喜男 (Sumiya M.)・劉 進 慶・涂 照 彦 [1992]. 『台湾の経済』、東京大学出版会。

田村紀之 (Tamura T.) [1996a] "韓国経済の到達点: その実力と苦悩(1)-(24)," 『統一日報』, 4月11日- 6月1日号。

——— [1996b]. "韓国の権威主義体制と民主化: 台湾との比較," 『途上国の経済發

- 展と民主化勢力の台頭に関する研究』、統計研究会、43-94。
- 谷浦孝雄 (Taniura, T.) (編) [1988]. 『台湾の工業化：国際加工基地の形成』、アジア経済研究所。
- [1989]. 『韓国の工業化と開発体制』、アジア経済研究所。
- 田弘茂 (Tien Hung-mao) [1989]. The Great Transition: Political and Social Change in the Republic of China, Hoover Institution Press.
- (ed.) [1996]. Taiwan's Electoral Politics and Democratic Transition: Riding on the Third Wave, M. E. Sharpe, Inc..
- \*蕭峯雄 (Xiao, Feng-xiong) (編) [1994]. 『我国産業政策与産業発展』、遠東経済研究顧問社。
- 尹龍澤 (Yoon, Yong Taek) [1996]. "韓国憲法の経済条項の変遷に関する一考察：解放後の廃墟から高度経済成長への離陸まで"、奥島孝康・千野直邦他『現代企業法の諸問題』、成文堂、39-68.
- \*余英時 (Yu Ying-shi) 『中国近世宗教倫理与商人精神』、連経出版事業公司、1987年。
- \*周添城 (Zhou, Tian-cheng) [1991]. 『台湾産業組織論』、二十一世紀基金会。

# 오끼나와와 대만

金城睦(킨조 시카시) 변호사

## 1. 들어가는 말

나는 지난 밤 이 땅에 도착했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움 스케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春祭追悼會에 지난 리플릿에도 불구하고 참가하지 못한 것은 아주 유감입니다.

나는 진행 일정에 따른 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은 항공편 때문도 나의 태만도 아니다. 실은 어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오끼나와현 收用위원회에서 미군용지 강제사용에 관련한 1회 공개심리가 있어 나는 어쩔수 없이 그곳에 출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오끼나와는 미군기지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국내외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최대의 초점은 미군용지의 강제사용에 연관된 공개심리다. 약 3천명의 지주가 자기 토지를 미군기지로서 사용하기 위한 정부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 지주의 토지를 강제로 취합하여 미군기지 유지 강화를 꾀하기 위한 일본정부(방위청 시설 那霸방위시설국) 간에 대논쟁, 대공방이 전개되는 풍경이 수용위원회의 공개심리다. 이들 지주 중에는 전후 50년에 걸쳐 조상 전래 의토지를 줄곧 자기 주거와 농지 등으로 생활과 생산의 장을 삼고 싶어하므로 미군기지로 사용되어온 땅의 소유자라도 미군기지 반대의 입장에서 의식적으로 돈을 내서 미군기지가 된 토지를 공동 구입하고 공동 소유하여 군용지 계약을 거부하는 一坪 反戰지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평화도시, 생활도시, 문화도시의 전설을 꾀하는 那霸도시라는 군현의 자치체도 포함한다.

1회 공개심리가 기묘하게도 이 심포지움의 첫째날과 같은 날에 열려서 1997년 2월 21일은 역사적인 날로서 후세에 자리매김된다. 몸은 하나고 중대한 두 가지 행사 중에서 한쪽만 참가할 수밖에 없으나 나 개인으로서도 잊지 못할 귀중한 날이고 이 발언 기회까지 주어져 영광스럽다.

나는 어제 오끼나와에서 군사기지반대투쟁의 하나로서 위치지우는 이 공개심리에 일평반전지주회의 대표 연설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那霸시의 대리인(법률고문)으로서 참가하고 기지에 반대하는 많은 민중 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오끼나와에서 모든 악의 근원은 전후 50년 통틀어서 기지이다. 기지가 있는 까닭에 오끼나와 현 주민의 인권은 침해받고 환경은 파괴되고 길닦기와 지역개발도 현저히 손해볼 뿐더러 오끼나와 미군기지는 아시아에서 민중의 인권 억압, 평화 교란, 이 지역에서 민주적, 내발적, 평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 2. 이번 주제와 관계하여 오끼나와와 대만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아도 미국의 오끼나와 지배, 오끼나와의 미군기지가 얼마나 해악을 끼치고 그 근원을 이루고 있다.

임서양 선생의 개회사에서 서술했던 2.28사건을 비롯한 대만에서 국민당정권의 학살과 숙청의 백색 테러는 전후대만사의 가장 참혹하고 불행한 사건인데 대만에 인접한 오끼나와와도 깊은 관계가 있고 오끼나와 사람중에도 많은 희생자를 냈다.

2.28사건이 발생한 1947년 2월 시점에서 오끼나와 출신자가 계속 체류자로서 110인과 그 가족 188인(모두 300인 내외)이 송환되지 못하고 대만으로 머물렀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2.28사건 때의 공포의 칼날은 용서없이 내리쳤다.

또한 오끼나와의 戰後는 오끼나와전투로 철저히 파괴되고 오끼나와 전체가 초토화된 가운데 살아남은 오끼나와인은 미군의 수용소에 갇혀 일체의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졌다. 이런 가운데 몇몇 수용소를 탈출하거나 귀향을 허락받은 사람 중에서 자활을 위해서 与那國, 石垣, 宮古 등을 본거지로 하여 대만의 물산을 들여오는 밀무역선을 타고 오끼나와 대만 사이를 빈번히 왕래했다. 이들 오끼나와인 중에도 사건에 휘말려 희생당하기도 하였다.

2.28사건의 전모 해명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이들 오끼나와인의 사건 관계자의 실태에 관한

조사는 거의 없고 그 실상은 아직 어둠 속에 있다. 오끼나와와 대만의 관계사를 정력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있는 又吉盛清(내 친구이며 연구자)는 오끼나와 출신 희생자는 적어도 30명 이상이라도 추정한다.

又吉 씨에 따르면 희생자를 낸 유족 중 한 사람은 '基隆항에 도착하자마자 국민당군대에 손발을 묶여 연행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일본식민지하의 基隆社寮島(현 화평도)의 오끼나와인 부락에서 사건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오끼나와인에서도 희생자가 나왔다. 대만인과 함께 체포되어 산속으로 끌려가 총살되었다. 절벽에서 바다로 던져져 총알세례를 받았다. 산채로 마대에 넣어져 바닷속에 내던져졌다. 기록항은 시체가 떠올라 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처참했다"고 전한다.

3. 또 하나 오끼나와와 관계된 것은 2.28사건과 그후 이어진 50년대 백색테러의 소용돌이 속에 국민당정권의 탄압을 피하여 많은 대만인이 오끼나와로 밀항한 것이다. 당시 오끼나와는 완전히 미군 점령하에 있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밀입국은 비교적 쉬었던 것 같다. 이런 미군 점령 하에서 물자도 없고 산업도 쇠퇴한 빈곤과 혼란에 찬 오끼나와이었어도 백색테러가 횡행하는 대만보다는 안정된 곳이었다고 한다. 오끼나와로 밀항했던 대만인들은 그후 백색테러를 두려워하여 조국 대만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끼나와 사회에 정착하였다. 오끼나와의 맛있는 중화요리집 경영자와 요리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오끼나와의 일본 복귀(1972년 5월 5일)에 맞추어 일본국적을 취득, 이후 일본인으로서 오끼나와에서 살고 있다.

4. 이렇듯 오끼나와와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또한 인간의 왕래 교류면에서도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다.

대만이 일본의 식민지지배하에 있을 때 많은 오끼나와인이 경찰, 토목인부, 교사 등으로 동원되어 대만으로 건너갔다. 일본의 패전시 약 3만의 오끼나와인이 대만에 체류한 것이 확인된다.

2.28사건의 원인으로서 일본의 식민지지배 연장선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 대만식민지 지배는 일본제국주의가 행했던 것이더라도 오낀마와인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 이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전후에도 또한 오끼나와는 미국의 세계적인 반공전략 중에서 미일 대만 한국의 군사블럭에 짜맞추어져 그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 방책으로서 오끼나와를 본토에서 분리, 미국의 군사 專攻 지배하에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센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인데 이와 아울러 미일안보조약, 일대 평화조약이 일체가 되어 국민당정권의 연명책이 되어 50년대의 반공독재의 백색테러에 편드는 배경을 형성한 것, 국제조약상의 커다란 연결면에서도 오끼나와와 대만 그리고 50년대 백색테러와 연동하는 것을 빠뜨릴 수 없다.

오끼나와의 50년대도 또한 미국의 군사식민지적 지배하에서 오끼나와의 인간에의 인권 침해, 억압, 폭정이 격렬하게 행해진 시대였다. 미군기지의 건설을 위해 총검과 불도저에 의한 수많은 농민의 토지 수탈이 이루어졌고 빈발하는 미군 범죄에 의한 오끼나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이 위태롭게 되었다. 집회, 결사, 언론의 자유는 빼앗기고 본토와의 왕래조차 미국에 반감을 갖고 있는 인물에게는 허락치 않아 분명 암흑 시대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관점에서 浦崎成子씨, 저널리스트로서 감성이 풍부한 시인으로서 高良勉씨, 川満信一 씨가 다음에 보고할 것이다.

오끼나와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평화와 자유를 얻고자 일어서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와 권리를 획득 실현시켜왔다. 이러한 오끼나와 민중의 투쟁사는 오늘날 대만의 자유화 민주화의 싸움에도 공통되는 점이 있다.

6. 나는 1972년 1월 오끼나와 복귀 직전에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다. 계엄령이 실시되고 가는 곳마다 총을 든 병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미군 지배하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조차

도 이상스럽게 보인 것을 선명히 기억한다. 그랬던 대만에서 오늘 백색테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추도와 명예회복을 꾀하며 더 나아가 19년간이나 옥중에 갇혀 있었던 서승씨를 중심으로 한 국에서 백색테러의 문제해명과 아울러서 일, 오끼나와, 한국, 대만의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은 오끼나와의 투쟁사를 되새겨보니 나로서는 감개무량하다.

대만,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지금도 백색테러가 횡행하고 그 희생자가 뒤를 잇는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든 인간이 진실로 인간의 존엄을 확립하기 위해 과거를 배우고 현재 문제를 해명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연대와 협동을 심화시켜야 한다.

(부기: 원문은 높임말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보통말로 번역했음)

#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공포정치하의 수탈경제와 그 반동성

동경경제대학교 교수 유진강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

## 공포정치하의 수탈경제와 그 반동성

동경경제대학교 교수 유진경

### 1. 문제와 그 분석 각도

분문의 목적은 대만이 전후 백색공포시기에 전제정치의 경제기초를 분석하여 그 구조와 기구 및 그 반동적 성격과 본질을 밝히는데 있다. 소위 반동정치라 함은 필자의 생각으로는 사회의 진보적 성향과 배치되는 것을 말하는데 혹자는 역사 현대화의 발전적 동태에 위배되는 것으로도 말한다. 소위 정치적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면 반민주자유, 반인성인권, 반 현대화의 제도 구조 및 그 실행 조치 등을 모두 반동 개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면 시장조절 기능과는 반대로 강권으로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공포정치를 이용하여 경제체제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반동경제이다.

대만의 전후 경제는 194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백색공포의 큰 특징을 가지는 시기로서 정부가 쌀 사탕수수농업과 공영경제(공업·금융·유통) 그리고 군사제정의 셋방면에서 시장·화폐경제체제가 도퇴되는 것에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농공인민 대중을 강권으로 수탈하며 항공상업은 보호하여 전제 공포정치를 공고히 하는 것은 소위 독재체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근대사 발전관점에서 보면 일본통치하의 식민지 자본주의 경제가 국민당 일당 독재하의 반봉건성으로 전도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전근대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은 한 개의 역사반동이 도퇴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경제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사회<sup>①</sup>강제 누적과정으로, 기업자본 측면에서 본다면 한 개의 자본원시 누적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체제의 기본 개념을 이 글에서는 수탈경제(Squeezed economy)라는 단어로 표현하겠다.

「수탈」이라는 단어에 함축된 일반적인 의미는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화를 강요하여 소위 경제개념 즉 탈취·약탈·약취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혹자는 잉여노동가치도 이야기 한다. 수탈은 여기에 또한 두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경제의적 강제성의 수탈로서 예를 들면 토지세나 세금 등의 징수 수단을 통하여 약탈하는 것도 반드시 일종의 수탈에 속해야만 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국민당 정부는 미당농업에서의 수탈수단도 약탈과 착취를 포함하며, 공영경제의 수탈수단은 시장교환 관계를 기초로 착취하였으며 군사세원의 수탈도 사회적으로의 환원 작용 없이 완전히 약탈을 통해서 단행되었다. 총괄적으로 말해 이 일련의 시기 대만의 경제 특징은 바로 인민을 수탈하였던 경제이며, 가령 이렇게 권력의 수중에 집중된 재화는 한편으로는 반공군사 정권의 공포통치를 유지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량 공상기업이 자본을 누적하는데 사용되어 독특한 독재를 각색하는데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의 개발독재가 이후의 대만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켜 지금의 사회적 풍요를 이루는 데 공헌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사회경제적 반동성을 정당화·합리화 심지어는 미화할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변증법인 변화의 과정이며 훗날의 한 시기의 발전이 왕왕 전날의 한 시기와 연결·부정·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좋은 원인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며 나쁜 원인이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는 것도 아니다. 역사발전의 인과관계는 진보의 결과가 종종 앞의 원인을 부정함으로서 오히려 얻어지는 것이다. 1950년대 수탈경제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수탈 독재 통치체제를 정당화·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량한 자본이 불가능하게 되어 객관적으로 그 내부에서 수탈독재를 부정하는 사회역량을 배양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경제발전의 성과를 가져온 백색공포기의 반동수탈경제를 정당화하거나 혹은 미화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해서도 않되며 오히려 그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그 족적을 비판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인식의 근거는 역사발전의 변증법칙에 있는 것이다. 역사적 착오는 다시 변할 수 있으며 역사적 교훈은 반드시 좋게 받아들여 백색공포하의 수탈경제적 반동성을 반드시 철저히 규명되고 파헤쳐져야만이 훗날 모범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방향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역사재판적 관점과 문제의식에 따라 문제를 볼 것이다. 다음으로 목적과 수단의 관계 특히 수단의 관찰에 치중하여 수단의 관찰로부터 목적의 주체적 성격을 이해하여 그 본질에 접근하는데 역시 실증적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의 표방하는 목표는 모두 송고하고 완전한 선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채택되는 정책 수단 -혹자는 제도 기구의 실천 작용이라고 말하지만- 이 종종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가권력 성격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수단적 측면에서 깊이 토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국민당 정부가 백색공포시기에 표방하였던 반공이념은 민주·자유·인성·반독재·반잔학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만의 현실은 공교롭게도 정반대로 계엄체제하에서의 전제독재·공포·비인성사회였다. 구호와 현실·목적과 수단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심지어는 양두구육의 과법치함도 있었다. 즉 미국 또한 예외로 되지 않는 데 미국도 민주·자유·인권을 표방하였지만 당시 대만의 공포정치의 현실에 대해 자국의 외교적 이익을 고려하여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여 눈 감고 용인하였으니 어찌 민주·자유·인권의 이념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역시 수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백색공포 시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 시작되었으며 언제 퇴색되었는지는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에서 각기 설명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 깊이 빠지는 것이 무의미 하므로 대략 1950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일단의 시기를 그 주요 고찰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 2. 수탈경제(Squeezed economy)의 역사 시대적 배경

백색공포시기는 국민당정권이 광대한 인민 대중에 대해 수탈경제체제와 기구를 형성한 것은 필연적으로 그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반인민·반민주·반인성·반현대적 사회경제 제도는 반드시 내외의 특수한 관경과 조건에 의거하거나 혹은 기생하여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대만의 시대배경과 조건은 대체로 크게 세 방면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즉 대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일본식민지 경제의 잔재와 대륙의 국민당 정권의 성격과 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형세하의 체제 그리고 국제간 동서 냉전의 반공체제의 제약 등의 세가지 요인이다.

첫째, 일본식민지경제체제의 잔재 요인에 관하여. 우리는 수탈경제체제가 공영경제 체제의 확대에 의거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하나의 공영경제 체제는 일본 사람들이 소유하였던 독점자본을 완전히 접수함으로서 이루어졌으며 그 것은 장차 거의 국유화되었다. 예를 들면 부족함이 없는 미곡량식관리체제는 일본총독부가 전시에 사용하였던 양식통제 배급제도를 개편하여 계승한 것이고, 대만 당업공사는 일본인들의 당업 독점자본을 통합하여 만든 것이며 기타 중요한 기간 산업 및 금융·무역기구는 대부분 일본이 만든 것을 접수한 것으로 그 숫자를 다 들 수 없다. 일본이 대만에서 이루었던 중소형기업은 모두 통합하여 공광업과 농림업 두 개의 공사로 통합개편되었다. 이 공사들은 공영에 부적합하여 1953년에 비로소 토지개혁을 할 무렵에 시멘트·제지업 두 공사를 민간에 이양하였는데 전체 공영경제를 보건데 그다지 큰 규모도 아니며 중요하지도 않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 수탈경제체제에 의거한 공영경제 체제는 모두 일본식민지 경제체제의 잔재 위에 건립된 것이다며 식민지경제가 공영경제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은 것처럼 수탈경제도 그 성립조건을 상실하였다.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 조건은 대만 본지 민간자본이 미천하였고 이 시기에 일본들이 남기고 간 현대산업경제를 맞을 힘이 부족하였으며 또한 신정부의 대규모 국유화 조치에 대한 저항력도 없었으므로 점유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자면 민작자본 역량의 박약한 원인 또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였으며 일본 식민지 통치의 피해는 이루 비할 데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국민당정권의 체질과 중국내전과 연이어진 비정상적인 형세는 수탈경제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둘째, 국민당 정권의 성격과 중국 내전이라는 비정상적인 형세의 규제에 관하여.

이 문제는 먼저 '국가자본을 발전시키고 개인자본은 결제하라'는 손문의 민생주의 지도 이념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당 정부는 이 지도 이념에 의거하여 공영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훗날 이 이념은 그 본래의 합리성을 가지게 되나, 문제는 국민당 정권이 '국가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 실천한

구체적인 표현은 오히려 1930년대 및 항전시기 중경 정권하에서 성장한 중국 관료주의 체제였으며 4대 가족이 핵심이 되어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4대1당의 수탈경제를 돈독히하게 하였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성격의 정권 정책이 전후 대만에 와서 연장되었고 제일 먼저 일본인들이 소유하였던 산업을 국유화하여 공영경제를 창건하였고 후에는 내진이라는 비정상적인 시기를 이유로 수탈경제를 강화하고 가령 주구를 일삼고 전후에는 대만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국민당의 중앙이 대만으로 온 이후에는 이 정권의 정책 성격과 결탁하고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1950년대에 백색공포시기의 대만수탈경제위에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미당농민에 대해 강권으로 수탈하고 공영 경제의 이윤을 독점하고, 군비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해 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경제권제는 비교하여 후에 다시 상술하겠다.

세 번째로 동서 냉전 반공체제에 관하여는 국제 요인에 속한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항미원조를 위해 참전함으로써 극동지역은 동서냉전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미국은 중국 대륙을 봉쇄할 정책을 발동하기 위해 대만, 일본, 한국 및 월남등 동아시아의 반공국가들과 결합을 더욱 돈독히 하고 대규모의 대외경제군사 원조를 전개하였다. 미국의 대외원조는 자국의 안전과 외교이익을 위해 단지 반공정권에 대해 군사경제 지원을 하였는데 반공군사정권의 독재전제에 대하여도 비민주적, 비인성적 잔학한 조치도 좌시하며 간섭하지 않았다. 대만에 대한 경제 원조도 주로은 공영기업에 이루어졌으며 간접적으로 수탈경제체제를 지원하였다. 심지어 간신히 목숨만 유지하던 한줌의 국민당 통치집단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밑는 구석이 있어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아무거리낌없이 백색 공포통치를 단행하여 인민을 수탈하여 동북아 지역의 독재 전제의 극우 반공군사정권의 대표적인 전형을 이루어 냈다. 이렇게 보건대 냉전체제하에서만이 비로소 가능한 반동체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면 일본·대·미국의 세측면에서의 역사 사회 및 정치군사 요인이 깊이 영향을 미쳐 당시 대만의 백색공포하의 사회경제 체제를 규획하였다. 우리가 쉽게 언급 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와 눈앞의 형세를 서로 비교할 때 오히려 사건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소이 말하는 역사가 살아있느냐 하는 것은 즉 역사가 과거이며 또한 현재와 미래이다. 이하에서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기간에 국민당정권의 농민들에 대한 수탈 및 공영경제를 통해 인민대중에 대한 가중한 세금징수의 수탈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백색공포정권의 물질적 기초와 그 반동성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미 이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증이 있었으므로 그 개요를 약술토록하겠다.

### 3. 미당농업 통치하여 벼 사탕수수 농민을 수탈하던 기구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말까지 대만사회경제는 농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농업중에서도 벼와 사탕수수의 두가진 작물이 그 근간을 이루었는데 국민당 정권은 이 미당농업에 대하여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주요 농산품과 농민의 노동 영여가치를 장악하였다. 당연히 미곡과 사탕산업의 통제방법은 서로 같을 수 없었으므로 당연히 나누어 검토하여야되므로 먼저 미곡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1) 벼농사의 수탈기구에 대하여 - 비료와 곡식을 교환

귀납식량 징수정책은 대체로 3가지 방법과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조로 실물미곡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무상징수로서 탈취적 수탈 범위에 속한다. 두 번째는 강제로 미곡을 수매하는 방법이다. 즉 시장에서 공정가로 미곡을 수매한 후 다른 가격으로 강제로 교환하게 하는데 탈취와 약탈 범위의 수탈이다. 세 번째는 실물교환 방법으로 주로는 비료와 미곡을 교환한다. 비료는 당연히 정부가 독점하여 공급해야 하므로 교환비율 또한 공정해야하는데 서로 다른 가치로 교환한다. 이는 탈취범위의 수탈이다. 동시에 이와 같은 방법은 화폐경제를 도퇴시켜 실물경제로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시장경제에 위반되며 자본주의 및 현대적 의미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식량징수 정책의 세가지 방법중 바로 이 실물교환통제 경제가 주요한 부분으로 또한 이것은 대표적인 농민수탈정책의 반동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대만의 전후 식량통제는 일본의 항복과 같은 시기에 시작되었는데 1945년 10월 신정부는 일본이 전시에 만들었던 양식통제 방법을 기초로 하여 「식량관리 임시 변법」을 공포하였다. 1946년 7월에는 「대만성 전조실물실시 변법」을 공포하고 같은해 제2기 작물부터 실물지대를 실시하였다. 같은 해 11월 「대만성 식량국」을 설립하여 식량통제를 전담 관리하였다. 1947년 7월 다시 「대만성 식량수매 변법」을 공포하여 식량강제 수매를 강행하였다. 1948년 9월 「대만성 정부 화학비료배급 변법」을 다시 공포하여 비료와 곡물의 교환제도를 실시하였다. 상술한 세가지 방법의 식량징수 정책을 일찍이 전후에 오래지 않은 기간동안 이미 개정하였다. 이 식량징수정책과 제도는 국민당정부가 중경시대의 전시시대에 수립한 경제정책을 그 연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이 식량징수의 수탈경제는 대만식민지 경제의 잔재와 대륙전시통제경제의 결합체로 볼 수 있다.

1952년 대만인 실시한 「耕者有其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14만 3552갑의 농지가 10만 6049호의 지주로부터 19만4823호의 전농으로 옮겨졌다. 이 제도는 확실히 소농의 농업생산력을 재고시켰고 낙후한 식량생산을 증가시켰고 정부의 식량징수 규모는 이와 더불어 확대되어 1950년대의 농민들로 하여금 수탈기구를 수량상 확대시키고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수량 방면에서 식량농수탈의 정황을 살펴보겠다.

예를 들면 표 1을 살펴보면 1951년부터 1965년 15년간 정부의 식량징수의 정황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총체적으로 보면 매년 쌀 생산량은 증가하고 정부는 각종 명목과 방법으로 징수하여 쌀의 총량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여 총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30% 전후로 늘어나 그 규모 또한 상당하게 크졌다. 징수 방법도 상술한 바와 같이 대체로 수취와 수매 그리고 교환의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료와의 교환방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 총수의 2/3(66.3%)를 점하여 식량 징수 수단의 주를 이룬다. 다음으로 강제수매가 14.2%, 그 다음으로 세에 따른 수매가 13.7%를 차지하고 기타 방법등이다. 세에 따른 수매부분은 무상으로 징수로 이루어졌는데 기타 두 가지는 시장가격기구를 통한 징수로 주로는 가격의 차이를 통한 착취하였는데 먼저 비료 교환 양곡의 수탈 관계를 살펴 보겠다.

이 시기 대만의 비료는 국내 생산(대만비교공사) 혹은 외국 수입된 것이던 모두 성식량국을 통해서 통제되었다. 비료 곡물 교환의 비율(총량으로 계산) 1대1로 이루어 졌는데 즉 농민은 1킬로그램의 쌀을 가지고 식량국에서 비료 1킬로그램을 교환한다. 이 기간 비료 공급의 상황은 표2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략 60%가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었다. 수입 비료의 매顿당 가격은 그림 1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국산비료보다 가격이 약으로 곡물 가격의 1/2내지 1/3정도이다. 큰 폭이 이윤이 발생하였음이 명확한데 이 차이 부분이 바로 정부가 농민에게서 수탈하였던 구체적인 형태이다. 정부가 수입한 비료의 비용은 얼마인가? 후에 다시 제기하겠다.

다음으로 강제 수매의 수탈 관계를 살펴보겠다. 식량국이 농민들에게 징수가격을 공정하게 하려면 적어도 자유 시장가격으로 되어야 한다. 그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공정가격은 대략 자유가격의 2/3정도로 같지 않다는 것은 정부가 식량수탈의 구체적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비료를 수입하고 일부분의 쌀을 수출하여 외환을 그두어 그 돈으로 비료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관계는 표3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다. 1952년 부터 1965년 까지 수입된 비료의 양은 455만톤으로 가격은 모두 2억 7044달러인데 같은 기간 동안 대만이 수출한 쌀의 양은 191만톤으로 2억7700달러로 양자 간의 금액이 비슷하다. 이것은 하나의 우연으로 어떤 계획의 평균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191만톤의 쌀의 양은 계산해보면 정부가 징수한 미곡 총량의 대략 20%가 된다. 이것이 바로 비료 환곡의 범위에 속하는 데 다시 말해서 강제로 수매한 량에서 정부가 징수한 도곡량의 전체 부분이 된다. 총체적으로 말해 대략 징수 총 도곡량의 1/3에 해당 되는 데 2/3는 무상으로 수탈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 정부는 매년 총 도곡량의 대략 30%를 징수하고 그 중 20%는 무상으로 수탈하는 것으로 그 규모의 막대함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정부 징수 식량의 용도는 수출하는 일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군량미로 공급되며 군사재정으로 지원되며 일부분은 시장 쌀 값조절과 재해를 대비해 비축해둔다.

위에서 언급한 바를 종합하면 식량징수정책중 은밀하게 도농을 수탈하는 기구중 가장 주요한 수단

은 비료 환곡으로 화폐경제를 도퇴시키고 실물교환을 채택하여 수탈에 이용한다. 무상 약탈은 도곡 총량의 20%를 실물로하여 도농의 잉여가치를 강요하여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군사재정의 부담을 덜었다. 식량가격을 안정시키고 낮은 공업자본을 유지시키며 한편으로 항공상업의 자본을 누적시켰다. 바꾸어 말해서 화폐시장경제를 도태시키고 농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군사재정을 지원하여 군사전제 독점체제를 공공히 하였다. 식량징수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농수탈경제의 반동성 및 그 기간 국민당 정권의 반동의 본질이다.

## (2). 사탕수수 농가에 대한 착취구조 - 加工分糖制

사탕수수재배는 대만상품농업의 대표작물로 역사가 오래되고, 벼재배와 더불어 대만상품농업의 쌍벽을 이루어 왔다. 전후, 일본인이 남기고간 4대 제당업독점자본이 전부 국유화되었고, 대만제당공사로 조직이 통일됨에 따라, 사탕수수재배농민의 지배관계가 전쟁전보다 더욱 공고히 되었고 식량국과 벼재배농민의 관계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긴밀해졌다.

제당업의 재생산구조는 사탕수수재배, 설탕가공, 시장판매의 세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진다. 대만 제당업 사탕수수재배의 80%가 경지규모가 채 1헥타르에 못미치는 개체소농에 의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만이 제당공사의 농장에서 담당하고 있다. 설탕가공으로 말하자면 전부 대만제당공사의 하청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시장판매는 정책제도를 통하여 대만제당공사의 전반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탕수수 원료공급의 80%인 사탕수수재배농가는 바로 대만제당공사(정부)의 통제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주요방법이 바로 加工分糖制인 것이다.

사탕수수 재배생산의 사탕수수 원료는, 반드시 제당공장에 팔려서 가공이 되어야만 비로소 설탕이라는 제품이 될 수 있다. 가공분당제는 바로 이 과정의 대만제당공사와 재배농민의 경제교환관계와 방법이며 다시말해서 사탕수수 재배농가의 원료를 제당공장에 맡기고, 일정한 비율에 의해 완성품인 설탕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대만제당은 가공 및 기타 소비의 맷가로 또 다른 부분의 설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 가공분당제도 일종의 화폐경제에서 실물교환경제로의 퇴보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설탕을 나누는 비율이 실질적으로 대만제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뒤에도 사탕수수 재배농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의 절반 이상을 규정에 의해서 대만제당이 수매해서 국제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실물교환관계 및 수매를 강제하는 방법은 稻穀徵收란 수단의 성격과 일맥 상통한다. 쌀과 설탕 착취경제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 개관을 살펴보자

1950년 대만 사탕수수 재배면적은 대략 9만 헥타르 정도고 사탕수수 원료의 생산은 매년 약 650만 톤, 가공을 거쳐 설탕으로 만든 것이 약 75만톤으로 그 중 80%의 생산량을 15만 가구의 재배농가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농가의 경지규모는 0.5헥타르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대만제당은 사탕수수 재배농가에 대해 압도적인 착취관계를 갖는다. 그 착취관계는 설탕가공 비율과 수매가격을 강제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설탕가공비율에 대해서는 표4에서 보이듯이 농민과 대만제당공사가 약 50% 정도로 나누어진다. 즉 재배농민은 사탕수수 원료를 제공하고, 완성된 설탕의 반을 가공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반만 가질 뿐이다. 이러한 교환관계가 공정한 교환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당공장은 면밀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닌 기계제공업으로 가공원가가 그렇게 높을 수 없다. 일제시기 제당업공사의 제조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다르기는 하지만 20%를 초과하지 않았다. 설령 50%의 배분비율 중 사탕수수 원료의 수확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까지 비율이 높을 수 없다. 따라서 농민과 공사 간의 50%대 50%의 가공배분비율은 혹실히 불공정교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배분비율은 대만제당의 일방적 결정의 독점성 비율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이것은 곧 일종의 독점적인 가격과 마찬가지다. 정부의 농민에 대한 착취관계는 이 배분비율과 결정과정의 독단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둘째, 수매방법과 가격의 강제에 대해서이다.

표4에서 보는 것처럼 사탕수수 농가의 둑인 설탕을 자유롭게 시장에 내놓고 판매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다르다. 대만의 설탕수출시장이 엄중한 제약을 받던 1949~54년 사이에는, 대륙에서 후퇴한 뒤 대륙시장을 잃어버린 데다, 그것을 대체할 국제시장을 찾기 어려웠던 시기여서 농민들은 30~40% 만을 내다 팔 수 있었다. 그러나 1955년 일본시장이 회복된 후부터 제재가 시작되어, 나머지 농민들은 30~40% 만을 내다 팔 수 있었다. 농민들의 설탕은 대·당에서 강제로 수매했고, 그것을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 시기 대·당공사의 경영목표는, 정부가 돈을 버는 것을 위해 이윤을 독점하는 것 외에도, 무역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것이 큰 임무였다. 대·당은 일정 수량의 수출용 설탕을 수매해야 했기 때문에, 수매가격 면에서 재배농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다가 벼재배와 경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농민이 사탕수수 재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대·당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시 표4를 보면 50년~53년 동안은 설탕수매가격이 쌀값과 일치하는 이른바斤米糖 관계 시기고, 이후에는 국제설탕가격의 기복과 쌀가격의 동태를 참조해서 설탕수매가격을 결정했다. 사탕수수재배와 쌀재배간에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 있는데 농민 수입면에 있어서 너무 큰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이 사탕수수 원료공급을 유지하는 것으로 대만제당공사의 최대이윤과 무역수지흑자 목표를 달성했다.

대만제당공사의 농민 설탕 수매가격은 벼재배농민의 수입과 균형을 고려해서 결정되었고 표면상으로는 불공정하거나 착취관계인 것 같지 않았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첫째 수매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착취성을 지닌 것이고 둘째 설탕가격의 개정은 쌀가격을 기준으로 평준화되었으나 쌀가격은 성식량국의 저가정책의 수중안 완전히 규제되고 그 불공정함과 약탈성이 위와 같이 제기되었다. 쌀가격이 이미 착취관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농민 설탕수매가격의 구조는 더욱더 정부의 농민에 대한 착취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 없었고 설탕수매의 착취적인 성격을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설탕과 쌀의 규제는 모두 정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綜上分糖制와 농민 설탕 강제수매정책의 전모와 대만제당공사와 재배농민간의 설탕분배와 시장유동 상황은 대략 3번 도표에서 개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만제당공사 자체 공급은 설탕 총량의 20%이고 나머지는 80% 중 가공분당제에 의한 사탕수수재배농가가 40%를 차지한다. 사탕수수재배농가가 마땅히 가져야 할 농민설탕의 40% 중에서 대만제당공사가 다시 강제수매방법으로 10%를 가져가며 나머지 15%가 농민의 뜻대로 국내시장에서 판매된다. 따라서 대만제당공사는 설탕 총생산량의 85%를 수집해서 해외로 수출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15%의 농민 설탕이 국내 소비에 공급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만제당공사는 1955년 다시 국제시장이 열린 후 64년까지 10년 동안 35억 700만 원(중국돈)의 이익을 남겼고 법인세 15억 9천만원, 설탕세 24억 8천만원, 기타 세금 16억 1천만원 등 모두 92억 5천억--년평균 9억 3천만원--을 국고에 납부했다. 또 다른 면에서 설탕수출수지는 합계 8억 300만 달러고, 연평균 흑자 8천만 달러로 이 액수는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금액과 차이가 없었다. 사탕수수 재배농가로부터 착취한 재산이 충분히 거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시 대만농업의 조건 아래 농민들은 벼재배와 사탕수수 재배, 두 종류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두 가지 종류의 작물은 성식량국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제당공사의 규제를 받고 있었다. 사실 둘 다 모두 국민당 국가자본의 일환으로 국민당 전제통치의 경제기초이고 쌀과 설탕의 통제경제는 한몸처럼 농민잉여노동가치를 착취하기 위해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쌀과 설탕의 착취방법의 공통점은 실물교환과 강제수매에 있고 이것은 화폐경제를 역행하는 것이다.

상품시장경제의 발전은 역사진보에 반하는 전근대 체제다. 일본식민지하에서 제기된 대만농업의 이른바米糖相剋의 모순관계는 전후 쌀과 설탕 상극관계의 소실은 국민당 국가자본의 착취경제의 선상에서 통일되었다. 쌀과 설탕 생산이 시장에서 경쟁작용을 나타내며 즉 농민은 벼재배와 사탕수수재배의 선택을 통하여 자본을 제어하는 기능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농민이 국가자본 전반을 대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독점 방식을 따게 되고 약탈과 착취관계가 확대되고 심화된다. 마침내 국민당 정권은 한편으로는 농지개혁을 실시해 농지를 농민에게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쌀 설탕 착취경제를 추진하여 농민 노동성과를 약탈하는 정치 위선적인 행각을 벌인다. 그 본질은 반농민, 반민족, 반현대적인 기본적으로 반동적이다. 그것을 미화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죄악이며 부도덕의 극치이다.

#### 4. 공영경제와 군사재정의 인민대중에 대한 착취

##### (1) 공영경제의 독점 착취

위에서 서술한 대만성 식량국과 대만제당공사는 거대한 곡영경제 중 두 개의 기관일 뿐 표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업 제조업 건축업 가스업 및 상업 금융업 교통운수 통신 등을 포함한 기타 261개(1966년)의 공영기업이 있고 그것은 강대한 국민당국자본 독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그것을 통칭하여 공영경제라 하겠다.

이 공영경제는 바로 국민당 전제통치의 경제자원과 물질기초다. 그것은 대만 식민지 유제를 계승하고 민생주의 이념을 모방하여 더욱 견고해졌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 동안 민간기업이 급속히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공영경제 역량은 더욱더 확대되었고 민영경제를 앞질렸다. 다시 표5에서 1954년과 66년을 비교할 때 기업 수에서 보면 곡영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반면 민영은 1.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자본액수면에서 보면, 1954년 공영과 민영의 총액이 비슷했지만 1966년에 이르면 공영은 민영의 1.4배에 달하고, 그 기간 공영자본은 41.4배 증가하였고 민영은 29.4배 증가하였으며, 공영의 증가는 조로 모든 기업 규모면에서 확대되었고 독점성은 더욱더 강조되었다. 이런 경향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배치되었고, 기형적인 발전이었다.

공영기업은 모든 업부의 규모가 민영기업에 비해 커졌고, 모든 업무의 독점자본은, 동시에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모두 특권 지위를 구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업이익의 위치와 함의는 일반 기업의 이윤과 달랐다.

첫째, 그것은 일종의 '독점이윤이다. 공영기업이 모든 업종의 시장에서 독점적이고 불완전한 경쟁의 과두독점이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공영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경영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목표를 위해 복무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윤의 대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셋째, 재정 공매 이익 범위와 중첩된다. 공영기업의 영업이익은 국고에 상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공매이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정부 재정 수입의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이상의 인식에 근거하여 주요 국영기업의 수지와 손익상황을 보면, 표6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1963년 중앙급의 주요 26개 국영기업의 영업 상황은 그해 영업 총액 1469억 원. 수입이 가장 많은 대당공사가 496억으로 전체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은 중국석유, 대만전력, 대만비료의 순이다. 대당과 대만비료는 농민경제 착취를 담당하는 주요 기구였다. 성식량국은 성급 단위로 표에는 실려있지 않다.

손익 상황을 다시 보면 이익 총액은 386억으로 영업수입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일반기업경영의 수준에 의거해 보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공영기업 독점이윤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중 역시 대당공사의 이익이 가장 큰 224억 원으로 이익총액의 반 이상을 점하고 있다(58.0%). 동시에 영업 수익액과 비교해보면, 영업수입액의 45.2%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액수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독점이윤이며 공매이익이다.

이 수는 위에서 서술한 제당업 가공분당제의 착취성의 논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비료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해의 이익은 19억 원으로 중국석유와 대만전기 다음을 차지했다. 위에서 서술한 비료 교환을 고찰해보면, 대만비료의 이익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러나 장부에 나타나있는 것뿐 아니다. 이같은 상황은 성식량국도 마찬가지이다. 성식량국이 거두어들인 곡식의 수지는 실물교환이기 때문에, 대만비료의 수지와 마찬가지로 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군수용 부분은 재정 수지 범위에 속해 있는 일종의 군사 기밀 수지이므로, 통계자료에서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와 같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공영경제의 구조는 시장경제의 독점특권을 통해, 일반대중을 착취하는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밖에도 마땅히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독점 특권으로 인해서 경영 효과가 약화되고, 손해가 쌓이고, 도태되는 공영기업들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표6에서 볼 수 있듯이 26개 주요 국영기업중, 6개가 적자를 내고있고, 2개는 손익이 0이다. 여기서 시장경제를 위반하는 공영경제첫데의 불합리한 면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아직도 어느 성급 공영기업에서는

종이가 넉넉치 않아 한장 한장 일일이 세는 형편이다. 여기서 냉전 체제하의 공영경제체제에 대한 미국원조가 맡았던 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나마 드리낼 필요가 있다.

통계에 의하면, 1950년대 국영기업의 주요 자금 출처는 표7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원조와 차관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다. 차관 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미국이며, 국영기업들의 자금출처 역시 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자본은 공영경제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둥 노릇을 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은 공영경제의 인민 착취 기능을 지지하는 원흉이다. 물질 기초면에서 국민당 전제공포 통치를 지원하는 '공범자'라 할 수 있고, 또한 냉전체제에서 국제정치 범죄의 공범이며, 미국의 민주 인권이라는 대의 구호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할 것이다.

## (2). 군사재정의 대중착취

위에서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영경제와 재정은 떨어뜨릴 수 없다. 특히 이 시기의 군사 재정은 공영경제의 지원을 더욱더 필요로하는데, 양식 징수 정책이나 가공분당제는 바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며, 그 착취는 거의 가혹한 세금의 성격을 지닌다.

이 시기 대만 재정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군사재정이다. 즉 대규모의 군사 부담이 전체 재정의 구조와 성격을 규제하는 것인데, 중앙세출의 약 80%정도를 차지하는 국방지출은 전체 세출의 내용을 좌우하고 있고, 군사세출은 세입의 구조와 특징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조세의 가혹한 착취적 성격 역시 여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먼저 세출구조면에서 재정의 면모를 살펴야만 할 것이다.

표8에서 보는 것처럼, 1950년대 중앙정부의 세출중, 국방부 지출이 전체의 약 80%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이 외교부지출로 3%, 그밖의 부서들은 거의 미미한 수준다. 중앙세출은 거의 군사지출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정부도 전체 대만 재정세출구조와 마찬가지로, 표9에 의하면, 1951년부터 65년까지의 15년간, 평균적으로 중앙은 2/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국방지출이 중앙,지방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면 53.9 %에 해당한다. 표에서 국방정부 항목이 행정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방지출을 제외한 정무지출은 14.3 %이고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교육으로 10.9 %, 그 뒤가 보안경찰로 5.5 %, 경제건설 5.4 %, 사회보장 3.5%의 순서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지출이 전체 세출의 절반이 넘고, 정무와 보안경찰 지출 비율이 19.8 %로 국방정무와 보안경찰 두 가지 항의 지출을 군사전제통치 세출로 통칭할 때, 그 비율은 73.7 %에 달하는 아주 높은 비율이며 그 다음인 경제건설의 5.4 %와 사회보장의 3.5 %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겠다. 알다시피 이 시기의 재정세출은 최대한 군사와 공안방면에 집중되어 있고, 건설이나 사회재분배 등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당히 기형적인 세출구조이며, 또한 바로 백색공포진제 통치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번에는 재정세입의 구조를 다시보면, 표10에서와 같이 중앙정부의 세입의 대부분의 항목들은 크게 조세, 기업 재산, 그리고 차관 원조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952년에서 62년까지의 평균구조를 살펴보면, 조세가 49.2%를 차지하고, 기업 및 재산수입이 26.1%, 차관 및 원조가 15.6%, 기타 9.1% 등이다. 간단히 말해서 관세, 물품세, 공매 수입과 미국원조 수입이 주요 세입 항목을 이루고 있고, 소득세 수입은 매우 적은 편으로 7.4%에 불과하다. 방위세는 국가비상시기의 특별세인데, 특히 군사 공안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과세된다.

소득세는 6.5% 가까이 되고 공영기업과 기타 재산수입 합계는 9.9%로 소득세를 초과하고 있으며, 미국원조수입에 의존하는 규모도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조세수입이 반이 안되고, 소득세도 또한 많지 않으니, 세무기초가 박약하여 세입이 특수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재정세금이 인민에게 주는 부담은, 직접세와 간접세 두방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직접세는 인민(개인과 법인)의 소득, 재산수입에 의거해 징수하는 거싱고 간접세는 인민의 소비에 맞추어, 재화의 유통과정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직접세의 성격은 소득에 의거해서, 재산의 부담능력에 따라 내는 누진세로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내는, 각 계층별로 상대적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세제이며, 많은 선진국가에서 모두 직접세를 주요 세원으로 하고 있다. 인민의 실질적이고 공평

한 부담으로 인한 재부의 재분배 기능 때문에 직접세 위주의 세입은 선진 발달형으로 이야기되곤 한다. 이와 달리 간접세는 일종의 소비 유통세이므로 빈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금액 또는 비율을 기회에 따라 부담하게 되며, 징수가 용이하다. 그래서 간접세 위주의 세제는 비교적 추징이 쉽지만, 광대한 사회 각종에 불공평한 부담을 주게 된다.

위와 같은 인식에 의거해서 대만의 세금상황을 보면, 표11과 같이 표10의 각종 세입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양분해서 그 비율을 보았을 때, 1956년-65년까지는 평균적으로 직접세가 19.2%, 간접세가 80.8%로 대만의 세입은 간접세 위주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상술한 공영경제의 수입은 세입상 많은 간접세로 이루어진 것이며, 직접세의 징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만의 재정 수입은 인민대중의 부담을 중심에 두고, 부자에게는 유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불공평한 세제로 낙후된,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조세체제인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세출의 구조와 특징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이 시기의 재정이 인민 대중의 가혹한 조세수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고, 인민대중의 착취를 기초로 한 군사재정은 반공전제의 백색공포통치를 공고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세입구조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서 소비유통면에의 간접세 징수로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동시에 재산소득수입면의 직접세 징수는 방치함으로써 부자와 공상계층에게 자본축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 농민을 착취하고 공상계층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반동 반인민의 군사재정이 여전히 상공업 발전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더라도, 민간자본의 축적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착취경제 구조로 인하여 인민대중에 의거한 국내소비시장의 확대는 한계가 있다. 1950년대 말 급속히 생산과잉의 불경기가 닥쳐 또 다른 측면에서 국민당 군사정권은 그의 전제독재통치를 정당화하고 인민생활의 방향전환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할 필요가 있었고, 인민생활 방향전환 제고를 모색했다. 196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객관적 조건과 기회를 제공했고 민간자본 역시 이러한 조류에 부합하여 저임금 과잉 노동력을 결합하여 외향형 가공 수출공업의 발전을 따라 잡고, 또 다른 단계의 자본축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다.

## 5. 맷는 말 - 반동착취경제 축출의 현대 의의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백색테러기의 국민당 전제정치의 불질기초는 노농대중을 착취하는 경제를 위주로, 주요 부분인 쌀, 설탕농업을 통제, 공영 독점경제체제 및 대중을 반민주적 전기성(전근대) 낙후경제 체제이며, 역사진보의 반동이라는 것은 위의 분석들처럼, 증명되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시기의 반동착취경제는, 설령 그 이후 대만 경제가 발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당화하는 것이 용인되지 않고 있다. 역사 발전은 변증적인 인과관계이기 때문에, 반동정권이 전제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개발을 하려하고, 독재제도의 개발을 수립하였고, 공상계층에 대해서 방치해 두었지만, 시장경제 및 개방경제는 발전하게 되었다. 민영경제 공영경제를 암도한 것이 비로소 이후 경제성장의 기본 요인이 되었고, 공영경제의 변증적 발전을 통합하게 한 것이다. 공영을 기초로 한 반동착취경제는 대만사회 경제, 역사발전을 지연시킨 장애물이며, 절대로 정당화 되거나 미화될 수 없다.

그러나, 반동착취경제의 잔여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현재 대만 사회경제의 기형적인 후유증이 되고 있다.

정치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모두 알고 있듯이 오늘날 대만의 금권정치, 黑金사회 더 나아가서 黑(폭력), 金(자금), 權(권력)이 결합한 통치세력이 대만 민주정치 및 사회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러한 정치의 근원은 반동착취 경제에 있다. 국민당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사업은 모두 당권의 특권에 의해서 이고, 공영착취 경제의 공과사를 구별못하는 관료자본에서부터 쌓여 온 것이다. 오늘날의 선진 국가에서는 하나의 정당이 이처럼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정당정치를 좌우하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근대중국을 되돌아보면 권력과 재력구조가 형식에 있어서 민주선거의 시운(時運) 위에, 폭력세력이

결합되어 폭, 금, 권(폭력, 자금, 권력)이 삼위일체가 된 반동통치세력이 되었고, 이것이 국민당 정권의 전통체질로, 이는 일찍이 1930년대와 전후의 대륙 시기에 시작되어,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대만에 남아, 대만의 정당, 정치, 민주정치의 진보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다음 경제면에서 보면, 공영과 민영경제의 두 가지 구조는 공영경제가 장기적으로 기간산업과 금융고지를 독점해 온 결과, 민간 현대 산업자본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중소형 가족경영의 발전 및 상업적인 가공수출 공업화로 국한시켰다.

오늘날 산업발전이 직면한 난국 및 대만 상인 자본주의의 특징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백색테러 하의 착취 경제의 국제적 의의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전제착취경제의 정권체질 및 냉전 체제라는 3가지 요소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필자는 냉전 체제 요소의 규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다고 여겨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앞의 두 요소는 대만과 대륙의 특수요소에 속하는 것이고, 냉전 체제는 일반 요소라는 것이다. 만약 이 냉전 요소가 없었다면, 백색테러 독재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시 말해 냉전 요소는 국제적인 원인이며 한국의 국가 테러주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냉전체제의 과실이고, 새롭게 자리 매김하고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만 한국국가 테러주의는 현대세계의 커다란 정치 범죄라고 여겨고 있고, 냉전은 이 정치 범죄의 『원흉』, 『공범』이고 후세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 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

흥기하는 아시아와 확대된 미일 안보 조약

王春生

主催：「東亞冷戰・國家恐怖主義」學術研討會執行委員會

主管：台灣事務局・台灣地區政治受難人互助會

協贊：日本事務局、韓國事務局

後援：中國統一聯盟

台灣社會科學研究會

夏潮聯合會

勞動黨

時間：1997年2月22日～23日

場所：劍潭海外青年活動中心（台北市中山北路四段十六號）